碩士學位 請求論文

電子貿易契約과 諸般 問題點에 관한 硏究

- 법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慶州大學校産業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朴 鍾 岩

指導敎授 趙 成 原

2004年 6月

電子貿易契約과 諸般 問題點에 관한 硏究

- 법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慶州大學校産業經營大學院

經 營 學 科

朴 鍾 岩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指導敎授 趙 成 原

2004年 6月

朴 鍾 岩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許 椿 

審査委員 金 殷 弘 

審査委員 趙 成 原 

慶州大學校産業經營大學院

2004年 6月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무역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불가피 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이라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전자무역을 할 경우 기존의 해외시장조사, 해외 거래자에 대한 신용조회, 무역계약의 체결, 신용장 발행, 수출·입 신청과 승인, 보험증권 발행 등 복잡한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는 자기 회사의 상품을 인터넷 시장에 내놓으면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가 인터넷 전자 메일로 가격 상담 후에 무역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무역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간 상거래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 동안 대기업에 비해 수출판로 개척, 마케팅 활동 능력, 자금력 등 경쟁 인프라 면에서 크게 열세를 보였던 경영환경 하에서 전자무역은 이제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은 기존의 전통적인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 반대청약 및 승낙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계약서, 텔렉스, 컴퓨터, 전화대화 또는 구두대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7]. 그러나 전자무역계약에서는 이러한 의사표시방법 외에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주요 쟁점으로는 첫째, 전자무역계약에서 수출상이 홈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 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전자적 의사표시는 송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상에서 전자무역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체결의 인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전자무역계약의 유인,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와 장소, 그리고 전자무역계약의 인증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자무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별적인 대응책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전자무역계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자무역계약의 개념, 전자무역계약의 주요내용, 그리고 전자무역과 관련된 규칙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논문, 자료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한 2차적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국제무역계약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동일한 문헌적인 고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자무역계약의 유인, 성립, 그리고 인증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내외 연구논문, 저널지, 관련 단행본, 관련 법규 등을 다양하게 고찰하여 연구의 토대로 삼었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에 수반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해서도 기존의 연구논문, 관련단행본, 저널지 등을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계약의 성립과 전자무역계약의 체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전자무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

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국제전자무역이라 함은 EDI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무역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기업과 기업간의 국제무역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간의 국제무역도 포함하고 있다.

제3절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전자무역계약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고찰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성에 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목적,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방법과 본 연구의 범위, 그리고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2장은 전자무역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제1절에 전자무역계약의 개념이 설명되어 있다. 제2절에는 전자무역계약에서 주요하게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3절에는 전자무역계약과 관련된 국제통일규칙과 국내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은 전자무역계약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전자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유인단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2절에서는 전자무역계약의 성립과 전자무역계약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3절에는 일반무역계약과 달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전자무역계약의 인증을 설명하고 있다.

제4장은 전자무역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1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전자무역과 관련된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전자무역계약과 관련된 보안·신용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하면서 도달하게 된 결론을 정리한다.

제2장 전자무역계약의 이해

제1절 전자무역계약의 개념

1. 전자계약의 의의

전자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와 전자적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1]를 말한다. 전자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컴퓨터 등을 매개로 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 전자계약은 전자거래의 각종 특징과 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전자계약의 유형은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의사표시를 전자화하는 전자매체에 따라 전자계약을 분류하겠다.

첫째, 컴퓨터 통신계약이다. 컴퓨터 통신계약이란 일정한 법률교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화된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그 계약 당사자에 따라 1) 기업간 컴퓨터 통신계약 2) 기업과 개인간의 컴퓨터 통신계약 3) 개인간의 컴퓨터 통신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간 컴퓨터 통신계약의 전형적인 예로써 EDI(전자문서 교환)에 의한 계약을 들 수 있다.

둘째, 팩스나 스캐너 등을 통한 모사전송에 의한 계약이다. 스캐너의 경우에는 스캐너에 의해 계약서 등의 문서가 전자 이미지화된 후에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어진다. 따라서 스캐너의 경우에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의 매개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모사전송에 의한 계약은 전·수신형태에 따라 일방의 팩스와 같은 모사전송장치로부터 타방의 모사전송장치로 전송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와 일방의 모사전송장치로부터 타방의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로 전송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

1)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4, p.120.

셋째, 전화에 의한 계약이다. 전화에 의하여 대화자간의 음성이 전자화 되어 전달됨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전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대화자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즉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자동판매기 기타 자동화장치에 의한 계약이다. 자동판매기 등과 같은 자동화장치에 의한 경우는 사실적 계약관계론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사실적 계약관계론이란 계약을 성립시키는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존재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한 사회전형적인 관계 또는 행위가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하고 존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적 효과가 생긴다는 이론을 말한다. 자동화장치에 의하여 성립한 계약은 이러한 이론에 따른다면 사회전형적인 행위의 하나로써 비록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의 유형은 아니지만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 계약관계는 기존의 계약법리에 의한 해석을 시도해보지 않고 새로운 해석론을 펴려는 주장으로써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이론에 따라 자동화장치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묵시의 승낙이나 의사실현 또는 추단적 의사 등에 의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1) 전자무역의 의의

전자무역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에서 나타난 전자무역에 정의들은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형태로 국가간 B2B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 전자상거래의 통합, 발전된 형태로 기존의 아날로그 제품(physical goods) 뿐만 아니라 무체물의 디지털 제품(digital goods) 또는 가상재화의 수출을 포함한 글로벌 커머스” 등 이 모두가 전자무역을 일컫는 정의들이다.

이와같이 전자무역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조동성(2000)의 연구에

서는 인터넷 무역을 "무역계약 체결의 이전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행위"로 정의하고 사이버 무역을 무역계약의 전과정을 포함하여 이를 전자무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2]. 오원석 외(2000)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무역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출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무역"이라고 정의하고, 가상공간에서 수출입행위 중 일부가 이행되는 사이버무역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고 있다[3].

대외무역법(2001)상에서의 전자무역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정의되고 있으며, 광의의 전자무역과 협의의 전자무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협의의 전자무역이라 함은 통상 인터넷무역, 혹은 사이버무역을 말하며, 광의의 전자무역은 인터넷과 EDI에 의한 무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언급되어지는 전자무역은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 능력을 지닌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사이버 무역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사이버무역, 전자무역, 인터넷 무역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사이버무역의 법적인 표현이 전자무역이고 인터넷 무역은 사이버무역의 일부분에 해당된다[4].

2) 전자무역계약의 의의

전자무역계약에 대한 통일된 개념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와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성립되는 무역계약"[5]으로 보고 있다. 페르듀(Perdue)는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성립되는 계약"[6]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전자무역계약에 관한 여러 정의를

---

2) 산업정책연구원, 인터넷 무역진흥을 위한 장기비전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00.

3) 오원석 외, 인터넷 무역론, 법문사, 2000.

4) http://allim.go.kr/download1/bodo/moc20001017-2.hwp.

5) Edward A. Cavazos and Gavino Morin, Cyberspace and the Law: Your Right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The MIT Press, 1996, p. 34.

종합해 보면 전자무역계약이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물품매매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무역계약은 전통적 무역계약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무역계약은 의사표시 또는 정보의 전자화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전자무역계약에서는 의사표시를 담은 전자적 기록의 생성, 수정, 전달 및 검색이 쉬워진다.

둘째, 전자무역계약은 의사표시 등의 행위자와 명의인의 동일성, 의사표시 등의 내용의 확정성, 분쟁해결을 위한 보존의 필요성 등이 전통적 무역계약에 비하여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전자무역계약은 전통적인 무역계약에 비하여 거래대상이 다양하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전자무역계약에서는 컴퓨터에 관한 각종 부품구매와 같이 컴퓨터 시스템 외부에 있는 물품은 물론 기업의 신용 기록에 관한 온라인 접속과 같은 시스템 내부의 목적물까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전자무역계약에서 다룰 수 있는 목적물은 전통적인 물품매매계약에서 취급하는 유형재의 물품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나 데이터프로그램과 같은 정보재 및 금융거래까지 그 거래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무형재의 거래가 바로 전적으로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순수한 전자무역계약이라 할 수 있다[7].

전자무역계약은 전통적인 무역계약에 비하여 위와 같은 몇 가지 특수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자무역계약이 계약법의 일반성립 요건이나 계약성립상의 일

---

6) Elizabeth S. Perdue, Creating Contracting Online: Online Law,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1996, p.79.

7) Raymond T. Nimmer, Selling Product Online; Issues in Electronic Contracting, Practising Law Institute, 1997, pp.2-3.

반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계약의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계약의 성립을 위한 방법이 전자화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적 본질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청약을 위해 매도인이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청약을 하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우편배달이라는 방법으로 변화된 것도 수단에 있어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아가 전화나 팩스로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는 것도 거래수단의 변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동으로부터 매매계약 이론의 본질적 변동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일민법 제정당시 전화라는 새로운 전달수단의 등장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매매계약이라는 본질에 수정이 가해진 것은 아니었다[8]. 그렇다면 인터넷이나 전자무역 계약을 위한 모든 전자적 기술을 갖춘 자동화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전화와 같은 기존의 거래수단으로 체결하는 것 간에 본질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물론 전자무역 거래를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되고 있지만 기존의 매매계약에 관한 법이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무역계약은 거래수단의 변화에 따른 발전된 형태의 무역계약일 뿐 법이론의 본질적인 수정을 가하는 전혀 새로운 무역계약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전자무역계약의 효과

1) 전자무역계약의 긍적적 효과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무역에 비하여 전자무역을 이행함으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하락을 들 수 있다. 비용의 절감은

8)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p.18.

전통적 무역이 전자무역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의 통신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거래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의 활용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화 및 합리화로 인하여 비용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적 교역의 가능으로 중간상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중간상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용의 절감은 결국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업무 처리 시간의 단축이다. 기존의 전통적 무역에서는 선적 서류의 수발이나 관공서 관련 서류의 발급 등과 같은 업무들을 대면적 접촉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사이버 무역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컴퓨터와 통신망만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제 서류들의 전산화를 통한 중복 업무의 감소이다. 무역업무에서 서류의 작성이나 수발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서류들의 데이터 축적 및 재활용은 업무의 중복을 회피하게 할 수 있다.

넷째, 시장의 확대이다. 전자무역의 특성 중 하나가 시장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무역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소규모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 기존의 전통적 무역에서는 시장에 관한 정보,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 기술 변화에 관한 정보 등 기업이 살아남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야 했다. 그러나 전자무역에서는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의 종합적 분석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1> 전자무역계약의 이점

(단위 : %)

	전체	구조별			규모별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효과	27.7	29.8	27.9	27.4	27.1	27.7
해외광고비절약	16.2	17.5	14.7	17.1	13.3	16.6
거래체결비용절감	11.6	5.3	11.1	12.2	13.3	11.4
신속한클레임처리	2.7	0	2.1	3.3	1.1	2.9
회사이미지제고	11.4	15.8	12.0	10.7	15.5	10.9
물류비용의절감	6.0	7.0	6.9	5.3	6.6	5.9
수출업무의신속화 및 인건비의 절감	23.5	22.8	23.5	23.5	23.2	23.5
없다.	1.0	1.8	1.8	0.5	0	1.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업계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조사부, 2000. 6.

2) 전자무역계약의 부정적 효과

전자무역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기업에게 유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첫째,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모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통한 상품 가격의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이제까지 특정 시장의 정보 독점으로 그 특정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변화하게 되어 다수의 경쟁 기업과 특정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보다 많은 기업들과 경쟁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무역이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한 국가의 통신 인프라가 아무리 실용적으로 방대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거래 상대방 국가의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사이버 무역을 원활히 진행 할 수가 없다. 사이버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계 각 국가의 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 자국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EDI, 인터넷을 무역 실무에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신 인프라 구축은 한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즉 막대한 자금과 인력 및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만 한다.

셋째, 컴퓨터 관련 전문 요원의 필요성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전자무역은 기존의 전통적 무역 업무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업무의 진행을 위한 수단이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통신망이 주류를 이루게 됨으로써 이러한 수단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전자무역의 진행을 위한 컴퓨터와 관련 장비의 구입 등과 같이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넷째, 거래 관계자들간의 신용 위험이 증가 할 것이다. 전자무역은 기존의 전통적 무역과는 달리 비대면적 거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 제품 거래는 유형 상품의 거래와는 달리 전 무역의 과정이 컴퓨터와 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성 구축이 무엇보다도 어려우며, 특히 디지털 제품의 전송에 의한 물류 운송은 전통적 무역에서와 같이 서류의 양도 등에 의해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달리 디지털 제품은 전송이 끝나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다. 또한 대금의 지급과 상품의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지라도 상품의 진위 여부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제품의 전자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들간의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계속적인 통신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디지털 제품의 통신망을 통한 물류 운송은 현재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할 기술 분야이다. 따라서 각 기업 및 국가는 현재의 통신 기술보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통신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앞으로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전자무역계약의 주요내용

전자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의사표시, 주요거래조건, 분쟁해결 및 법적구제조건, 그리고 기타사항에 관하여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본다.

1. 의사표시에 관한 약정

당사자간에 온라인계약 체결과 관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진정성의 문제는 국가에 따라 그 법적 효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계약당사자의 신분 확인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을 구별하여 계약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이름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웹사이트 주소 등과 같은 주요연락처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다. 그리고 법원이 특정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그 모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요한 계약인 경우에는 모회사의 이행보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9] 또한 거래의 형태에 관하여 본인 대 본인의 거래인지 혹은 본인대 대리인과의 거래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를 표시해 두어야 한다.[10]

2) 정의조항

전자무역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의미 외의 특별

9) 강원진, 무역계약론, 전영사, 2000, PP.181-182.

10) 오세창, 국제물품매매에 필요한 일반거래협정서와 계약서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1, P.99.

한 의미를 갖거나 잘 이용되지 않는 전문용어이어서 그 의미를 알아야 계약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계약내용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용어의 정의를 하게 된다, 또한 계약조항 중에서 여러 번 반복 사용을 요할 뿐 아니라 반복될 때마다 긴 문언을 여러 번 쓰는 번잡함을 피하고 읽기 쉬운 계약서로 하기 위하여 정의조항에서 미리 그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경우의 약호까지도 미리 정하여 두면 편리하다.

3) 통신수단

전자무역계약시에는 기존의 우편, 전보와 같은 통신수단에 비하여 당사자들의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자우편, 웹사이트, 전자문서교환방식, 기타 전자적 대리인 등이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청약과 승낙 또는 청약과 승낙의 철회 및 거절 등의 방법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통신수단을 반드시 밝혀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전자적 통신수단 또는 합의된 통신수단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승낙자가 이에 수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4) 통신표준 및 메시지 표준

전자무역계약시 계약당사자는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통신표준의 이름, 소프트웨어 상품 및 버전 번호,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체 등을 합의해야 한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전자무역거래와 관련한 대표적인 표준 및 표준화 대상은 전자카탈로그, 전자문서교환방식, 메시지, 디렉토리 서비스, 통신표준, 암호, 인증 등이 있다.

2. 주요 거래조건에 관한 약정

매매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대금결제, 보험, 포장 등에 대한 약정과 소유권, 위험의 이전, 권리 등 전자무역거래의 형태에 따라 수행되는 조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자무역 거래의 대상이 순수하게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요 거래조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나 오프라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거래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필요하다.

1) 매매물품

전자무역계약의 경우 매매물품의 대상은 크게 오프라인 절차를 수반하는 유형재와 디지털형태의 무형재가 거래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디지털 상품은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디지털 제품의 거래대상으로는 오디오 및 비쥬얼 제품, 텍스트 제품, 멀티미디어 제품 등의 컨텐츠거래와 문자서비스, 음성서비스, 화상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거래 그리고 노동, 자본, 정보, 지식, 문화, 기술 등 생산 요소적 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2) 품질조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제품의 품질조건은 물리적 재화와 품질표시방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디지털 제품 고유의 특성상 품질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약정해 둘 필요가 있다. 즉, 품질의 결정은 대체로 해당제품의 다운로드 후 온라인상의 실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품질조건과 상이한 경우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품질조건에서 이에 대하여 약정해 두어야 한다.[11] 또한 디지털 제품의 해당 프로세스 내용을 미리보기나 쉐어웨어 프로그

11) 이는 지정기간 내에 수입자의 매매승인을 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실험 또는 시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인 승인매매 또는 영미의 반환권 유무매매

램 등의 형태로 사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품질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약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수량조건

오프라인 절차가 수반되는 물리적 재화의 경우, 매매대상인 물품의 수량계산단위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단위에는 상자(case)나 개수(piece)와 같은 개수단위와 중량(weight), 용적(measurement), 길이(length) 또는 면적(square)과 같은 도량형이 있다.[12] 따라서 거래하고자 하는 물품의 성격에 정확히 맞는 단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디지털 제품은 수량조건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반복 사용 및 복제가 가능하다는 디지털 제품의 고유의 특성상 수량조건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일회성의 가치가 높은 제품의 경우 다운로드횟수와 관련한 수량의 결정방법 및 시기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발생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격조건

가격조건은 매매가격의 원가요소를 감안하여 정하는데 매거래시마다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정한다는 것은 번잡하고 불편한 일이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국제적으로 무역거래관습상 형성된 정형거래조건을 기초로 하여 매매가격이 산출되고 있다[13].

그리고 국가마다 고유의 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표시 통화를 기재해야 하는데 환위험이 적고 유동성이 높은 통화를 고려하여 어느 나라의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품질의 결정방법을 소극적 판매방식이라 하고 있으나 디지털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품질조건방법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12) 오세창, 전게논문, P.104.

13)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B. General Conditions, Article 4.1.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해 두어야 한다.

5) 선적조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거래의 물리적 재화는 선적조건은 계약물품이 어느 시기에 선적이 이행되어야 하느냐를 약정하는 것이다. 선적조건에서는 예를 들어, “terms of shipment: within sixty days form the data of electronic trade agreement" 와 같이 기재하여 본 전자무역계약서의 체결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선적하는 것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선적시기를 약정한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디지털 제품 특히, 소프트웨어,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어와 같은 제품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온라인 이행이 이루어지므로 선적조건에 관한 합의는 의미가 없다.

6) 대금결제조건

전자무역거래에 따른 결제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전자결제란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지급 및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다. 전자무역거래에는 신용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결제, 전자화폐(electronic money)에 의한 결제, 전자수표(electronic check)에 의한 결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s)에 의한 결제, 무역카드(trade card)에 의한 결제, 스위프트(SWIFT) 시스템에 의한 전송신용장을 이용한 결제가 있다. 그러나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송신용장은 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의 이행가능성을 모색하여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결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7) 보험조건

온라인 거래의 디지털 제품은 운송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대하

여 부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통적인 계약에서의 해상보험과 달리 전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위험에 대한 보험부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즉, 바이러스침입, 해킹, 개인정보유출, 컴퓨터범죄, 정보자산 및 휴업손실 등의 각종 내재위험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손실가능성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전자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1999년 8월 현대해상에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거래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현재까지 넷 시큐어(net secure)종합보험, 이비즈(e-biz@)배상책임보험, 네티즌 안심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14].

8) 포장조건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원격지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견고하면서도 경제성이 있고 취급하기 용이한 물품의 포장이 특히 중요시된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디지털 제품은 무형재로서 전송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포장이 필요하지 않다.

9) 검사조건

검사란 물품이 계약조건에 합치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인 검사기관에 물품을 검사시키는 일이다. 오프라인 거래의 물리적 재화의 경우 보통 매수인에 의한 선적전 검사인지 선적후 검사인지를 구분하여 원하는 조건을 약정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의 디지털 제품인 경우는 계약물품의 이행이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네트워크의 장애로 인해 계약의 이행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디지털제품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대체로 온라인 이행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다. 매수인은 계약물품의 다운로드후

14) http://www.hdmfb2b.co.kr/part/b2b/member/m_pro/fwew202_06.jsp.

온라인상의 설치(install)를 통하여 실현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전자 카달로그와의 비교를 통해 규격 및 전송용량 등의 일치성을 검사 및 확인한다.

10) 전자문서

전통적으로 매도인은 물품 인도의 증거, 운송계약의 증거, 그리고 권리 이전 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선화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상업송장 및 계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타 모든 일치의 증명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전자무역계약시에는 인도의 증거 및 기타 제공서류는 종이문서에서 전자통신문 또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러한 전자통신문 또는 전자문서는 관계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부가가치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15] 제3자에 의해 유용하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볼레로이다. 볼레로 프로젝트는 선화증권 등 수출입관련 선적서류를 전자화하여 그 데이터의 중앙일괄등록과 인증으로 전자적 유일성을 확보하고 중앙등록기관에 선화증권의 소지인등록 및 인증에 의하여 전자적 유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계획이다.[16] 이러한 볼레로 규약에 합의 및 참가한 멤버로 한정하여 참가자간에는 전자선화증권의 소유권이전을 전자적으로 행하고자하는 점이 특징이다.

3. 분쟁해결 및 법적 구제사항에 관한 약정

기존의 무역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무역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불가항력조항, 클레임, 중재조항, 준거법조항, 준거규정들을 설정해 두도록 한다.

---

15) INCOTERMS 2000, Introduction 19.

16) http://www.bolero.net. (2001. 10. 22.)

1) 불가항력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란 당사자의 통제를 넘어서는 모든 사건을 말한다.[17]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에 미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해서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해두고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이행위반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

불가항력사항으로는 천재지변(act of God), 화재(fire), 홍수(flood), 파업(strike), 노동쟁의(labor trouble), 기타 노사분규(other industrial disturbances), 전쟁(war), 수출금지(embargo), 봉쇄(blockades), 법적규제(legal restrictions), 소요(riots), 내란(insurrections) 등의 예를 들수 있다.

또한 전자무역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당사자가 알 수 없는 원인(any cause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으로 인해 해당 웹사이트의 접근에 방해 또는 지연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과 모든 기술적, 전자적 또는 통신상의 장애(any mechanical, electronic or communications failure)등을 포함하여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클레임 제기기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며[18] 아울러 제기한 클레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서(surveyor`s report)를 첨부토록 합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클레임의 제기

17)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Stenvens and Sons Limited, Pub., 1990, p. 121.

18) 계약이행내용에 대한 클레임은 법적으로는 시효와 출소기간까지는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시효까지 기다리기란 실무상 어렵다. 클레임 내용의 시비를 적절히 검토하기 위해서 요구가 있다면 계약이행 후 단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가해야 하는 것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기한은 물품이 도착한 후의 며칠 이내(within_days after the arrival of goods)로, 감정보고서는 그러한 제기기한 이후의 매칠 이내(within_days thereafter)로 약정한다.

3) 중재조항

무역계약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분쟁은 법률적 소송을 통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중재보다는 조정이 그리고 조정보다는 분쟁의 예방이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하다.[19] 분쟁에 대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장 보편적인 해결방법으로 중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무역거래시의 분쟁은 기존의 재판이나 중재제도로는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20] 현재 전자무역거래의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나 재판자체를 인터넷상의 재판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4) 재판관할조항

전자무역계약에서는 발신된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전자매체의 특성상 선택 가능한 법정지가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웹사이트나 메일 서버의 위치를 재판관할을 결정짓는 주소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 또한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이 해결될 것인가를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관할을 합의할 경우 이러한

19) Clive M. Schmitthoff, op. cit., p.472.

20)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영상재판제도가 있으나 현행법과 제도로는 적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은 즉결심판, 소액심판, 민사조정에 국한되어 있고 이 또한 원격영상재판을 행하는 것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고 재판출석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원격영상재판의 소송관계서류나 증거제출 등은 기존의 다를 바가 없다; 김종칠,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에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pp.307~308.

합의가 관계 당사국에서 유효한지, 선정된 법원에서 외국인의 출소권을 인정하는지 또는 선정된 법원이 판결의 집행을 처리하기에 적당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타약정

1) 보상(indemnification)

보상조항은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 불이행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실 등 간접피해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2) 계약의 변경 및 연장(amendment and extension of contract)

전자무역계약에서의 변경과 연장은 구두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이 일부 변경에 관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미리 약정하여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계약의 연장을 원할 경우 당해 계약의 연장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어야 한다.

3) 특허 및 상표(patent and trademark)

계약당사자는 계약물품과 관련한 특허, 상표, 디자인, 기타 지적소유권은 제조업자의 독점적 소유인 것을 인정하며, 어느 경우에도 제조업자의 명의나 지적소유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약정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동의 없이는 계약제품에 부여되거나 부착된 상표, 일련번호, 모델번호, 상표, 제조업자의 상호 등을 변경하거나, 외관을 손상시키거나, 제거

하거나, 무단 복제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약정해 두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termination)

계약은 보통 계약의 기간만료, 해제조건의 성취, 약정해제권의 행사 또는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종료 또는 소멸된다.

계약의 기간만료 및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당연한 것이므로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해제조건과 약정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의 조항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제조건과 약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하여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태 아래서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있는 사유를 약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의 양도(assignment)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21]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양도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양도가 가능하게 되므로 계약양도를 금지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계약상에 명기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계약양도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일정한 절차를 요할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 계약상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1) 강원진, 전게서, p.186.

제3절 전자무역계약과 관련된 법제

1. 국제통일규칙

국제무역에 있어서 인터넷이나 EDI 등을 통한 거래시 발생가능한 법률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국제간의 무역거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들의 국제적 통일규칙 제정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주요 국제 규칙으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운송에 의한 무역자료교환에 관한 통일규칙,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신용장통일규칙,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의 일반원칙, 그리고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 등이 있다.

1)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전자상거래가 증가됨에 따라서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는 전자상거래의 제도적 장애를 제거할 목적으로 1996년 6월 14일 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제29차 회기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하고, UN총회 제51차 회기에서 통과시켰다.

적용범위에 있어서 본 규칙 1조에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도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적 측면에서 기존의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문서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델법은 기존의 종이서류 위주의 거래방식을 탈피하여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모델법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다[22].

첫째,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규정한 이 법은 이른바 모델법으로서 그

22) 박용성, 인터넷 무역계약 성립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자체로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각국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 이를 참고로 할 뿐이다. 따라서 각국은 자신의 국가에 맞게 모델법의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입법화해야 한다[23].

둘째, UNCITRAL 모델법은 국내외 거래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델법이 국제거래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모델법 1조 적용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델법은 각국이 이 모델법을 국제거래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이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거래를 구분하여 국제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UNCITRAL 모델법은 공적인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업적인 범위내에서 적용되며[24], 모든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업적(commercial) 이라는 달은 물품 · 서비스의 공급 또는 교환을 위한 무역거래, 배급계약, 상업적 대표 또는 대리, 팩토링, 리스, 도급, 자문, 엔지니어링, 파이낸싱, 은행업무, 보험, 개발계약 또는 허가, 조인트벤쳐와 기타 형태의 산업적 또는 사업적 협력, 항공, 해상 또는 육상의 물품 또는 해상운송 등에 적용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모델법은 통관절차와 같은 공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5]

2)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교환에 관한 통일규칙

1986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주관하여 제정한 전송에 의한 무역자료교환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of conduct for interchange of trade data by teletransmission : UNCID) 은 서류중심의 문서를 전자서류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용장이나 운송서류 분야의

---

23) 최준선,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비교, 비교사법 제5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p.47.

24) 김종칠, 전게논문, p.290.

25) 최준선, 전게논문, p.79.

관련 국제규칙의 개정과 아울러 전자서류의 안전성, 유통성, 진정성 등의 법적 문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EDI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국제통일규칙이다.

전자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 사이에 동의된 행위규범의 확립으로 전자무역 자료교환의 사용촉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UNCID는 단순히 전자자료의 교환에만 적용되고 전송되는 무역자료의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NCID는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서로 다른 요구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EDI 교환약정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으로서는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UNCID는 각국의 법률이 EDI 내용을 수용하거나 또는 EDI를 다루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었다[26].

3)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INCOTERMS)"은 1936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국제간의 무역조건의 해석원칙을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무역에서의 분쟁을 방지하여 왔다. 인코텀즈 1990은 무역부문에서 종이서류 대신 EDI의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자 매매당사자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해 물품운송 중에 매도인이 유통운송증권 등과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대신 EDI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종래의 종이로 된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였다.

인코텀즈 2000에서는 전자적인 통신문의 사용 확대를 위하여 인코텀즈 1990에서 인도의 통상적인 증거로서 서류(usual document in proof of delivery)를 요구하는 대신에 인도의 통상적 증거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서류만을 한정하지 않고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6) 정현우, 전자상거래 활용상의 법적 문제점,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2, p.24.

INCOTERMS 2000의 서문에는 이러한 EDI 통신문은 관련 당사자에 직접 전달될 수도 있고 부가가치의 통신망과 같은 제3자를 통하여 전달될 수도 있음을 명시하고, 제3자를 통하여 전달된 경우 선하증권의 연속적인 소지인의 등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Bolero Service[27]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고 이에 관한 법적 기초도 마련되어 있음을 명시하므로 전자통신의 사용증대에 따른 국제기구와 국제법규[28]를 언급한 것은 전자통신의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코텀즈에서는 EDI 등 전자상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였으나, EDI 등을 어떻게 실행하는가에 대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이나 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참조해야 할 것이다.

4)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 : UCP)는 1933년 제정 이래로 제5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규칙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1975년부터 시행된 제3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복합운송이 반영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복잡한 통신수단 등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규칙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1983년에 개정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자동시스템이나 컴퓨터 시스템 또는 복사에

---

27) Bolero Service 는 1995년 설립된 Bolero Association Ltd.와 Bolero Operation Ltd.가 세계적으로 무역서류의 전산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SWIFT와 TT클럽(Through Transport Club)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1995년 7월부터 3개월간 법적 · 기술적 검토를 마쳤으며, 세계18개 무역권에 대한 법률분석을 완료한 뒤 시범기간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28) INCOTERMS 2000, Introduction 19; 동 서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법규는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1990)과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6)등이다.

의하여 작성된 서류도 수리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서면 또는 출력되었거나 기록되어서 증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출력되기 전의 전자문서 상태의 기록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29].

1993년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EDI 시스템을 신용장과 운송서류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 통일규칙의 관련조항을 완화하였다.[30] 다만, 1993년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전자서명방식의 도입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중심의 거래인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없는 거래방식을 도입할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수용되지 않았다.

5)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의 일반관례

ICC는 1997년 전자상거래와 인증기관의 설립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을 제정키 위하여 '디지털로 보장되는 국제상거래의 일반관례'(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 GUIDEC)을 제정하였다. GUIDEC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중요 사항을 모아 용어의 사용기준을 규정하였다. 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암호(public key cryptography)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륙법과 영미법의 다른 법적 전통을 조화시키기 위해 두 법의 처리내용을 함께 기술하였다.

6)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

국제 해사위원회(CMI)는 1990년 6월 컴퓨터 통신기술의 발달과 도입에 따른 EDI 방식의 무역시대에 전자적 선하증권[31]의 양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

29) 최준선, 전게논문, p.56.

30) 양영환 · 오원석 · 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3, p.480.

31) 전자식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운송인이 컴퓨터에 보존하고

'전자적 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 규칙 (CMI Rules for electronic bill of landing)'을 제정 · 공표하였다.

동 규칙은 제1조에서 "당사자가 이 규칙을 적용하자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동 규칙을 적용키로 합의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을 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전자식 선하증권이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행되었을 경우 이것은 서면 형식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 이것은 전자식 방법에 의해 수취된 메시지의 내용이 서면형식의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규칙에 의한 전자식 선하증권의 특징은 ① EDI에 의해 서면형식 선하증권의 유통과정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 ② 기본적으로 EDI 메시지에 의한 통지와 그것에 대한 확인 시스템이라는 것, ③ 전자식 선하증권의 중앙등록기관으로서 해상운송인이 설정되어 있는 것, ④ 개인 열쇠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 ⑤ CMI 규칙은 조약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 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해 규정에 따라 거래를 이행한다는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 등이다.[32]

2. 국내의 규칙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기존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밖에 없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무역에서 주로 문제시 되는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그리고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민

운송인과 송하인(매도인) 혹은 양수인(매수인 혹인 전매인)이 서로 EDI 메시지를 전송하고, 권리의 증명으로서 개인키를 사용함으로써 운송품에 대한 지배 · 처분권의 이전과 운송품의 인도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32) 조원길, 전자상거래 체제하에서의 무역관습, 국제상학 제13권 3호, 한국국제상학회, 1998.

법과 최근 공포된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이 있다.

이중에서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등은 사업자의 육성 및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대부분이 전자문서의 정의 또는 효력을 인정하는 수준일 뿐, 전자상거래나 인터넷 무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나 효력 뿐만 아니라, 의사표시의 송수신기, 개인정보 보호,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하여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비하여 오히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전자서명법 역시 전자서명의 효력과 공인인증기관의 정의 및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법률보다 구체화 되었다 할 수 있겠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 그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33] 하여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상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라 말할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의 목적 및 전자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전자문서, 작성자, 수신자, 전자거래, 전자서명, 사이버몰, 인증기관, 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둘째, 제2장에서는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보관, 전자서명의 효력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과, 송수신 시기 및 장소, 수신확인 등 송수신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등의 안정성, 사이버몰의 운영자,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암호제품의 사용 등 전자거래의 안전에

33) 전자거래기본법 제1조.

관한 규정이 있다.

넷째, 제4장에서는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자거래정책협의회,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의 표준화, 기술개발,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전자거래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제5장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동 법은 제5장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등의 운영에 있어서 쇼핑몰의 운영자와 쇼핑몰 내의 판매자 사이의 책임관계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34]

2)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부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거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반면, 동 법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자서명에 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35]"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동 법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대칭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비밀키)로 생성한 전자문서에 대한 고유한 정보를 말한다.(전자서명법 제2조 2항)"고 규정하여 그 범위를 디지털 서명에 한정하고 있다.

3)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EDI를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처리함으로서 전통적인 문서의 작성과 전달을 통하여 처리하는 방식 대신에, 문서에

34) 박용성, 전게논문, p.26.

35)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5항.

기록된 정보를 전자 문서화하여 컴퓨터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서 문서없는 무역절차를 실현하고자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9호로 제정·공포되어 1992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업무 처리방식으로는 무역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무역업무에 대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무역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하여 수출입 처리시간, 비용 및 인력을 절감하여 국내 무역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무역업무 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자문서를 정의하고(2조),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일반문서 및 서명날인과 동일하게 보며(제13조 14조), 전자문서의 도달시기를 규정하고 있다.[36]

동 법은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문서교환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후술하는 여타 입법에 있어서도 많은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37] 다만 무역업무 분야에 특별법으로서 전자거래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각 해당분야 별로 별개의 특별법을 양산하는 발단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38]

---

36)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문제, 법학논총,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www.Kyungwon. ac. kr/~profisjh/ec/e-comm.htm/

37) 노현수, 국제무역에 있어서 EDI 적용시 법적 제문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 국제무역연구논총5, 1998. 12. p.209.

38) 정현우, 전자상거래 활용상의 법적 문제점,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 p.32.

제3장 전자무역계약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제1절 전자무역계약의 유인단계

1. 전자계약의 유인

전자무역계약은 무역업을 하는 당사자들간에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의 이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수출업자가 컴퓨터를 조작하여 인터넷으로 통하여 다른 서버에 접근하거나 수입업자에게 전자우편과 같은 전자데이터를 보내 접촉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면, 전자무역계약 유인의 광고, 선전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수입업자의 전자우편 ID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업자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전자우편을 송신하여 수입업자에게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일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홈페이지나 사이버 숍에 접근하여 거래를 요청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계약에서 전자계약의 유인을 검토할 때는 광고, 선전에 그치지 않고 수출업자에 의한 적극적인 권유행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쌍방향 데이터통신과 광고

국제무역계약은 쌍방향 데이터 통신의 특징을 살려 한정된 소수의 개별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이미 실용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은 통신수단이 더욱 진전되면 앞으로는 특정 소비자들을 노린 개별화된 텔레비전 광고와 같은 형태의 광고 · 선전도 등장해 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수입지에서 소비자가 바라지도 않은데 대량으로 광고 · 선전의 전자메일을 보내오거나, 수입지에서 소비자의 개인 데이터가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형태로 영업의 편의를 위해 이용된다는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런데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상의 광고·선전 비용이 텔레비전 광고나 인쇄

매체에 의한 경우보다도 훨씬 싸다. 따라서 예컨대 텔레비전 광고나 국가 규모의 신문 지면광고라면 다액의 비용이 요하므로, 이러한 광고·선전을 하는 사업자는 그에 걸맞는 규모와 신용이 있는 것이라는 식의 소비자측의 일반적인 이해도 꼭 틀린 것만은 아니나,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광고·선전에서는 이와 같은 신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전자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다는 것 말고도 데이터 그 자체로는 복제된 것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령 유명기업으로 사칭하여 광고·선전하거나 기만적인 광고·선전을 용이하고 또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경우 소비자로부터 보아 누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추적이 곤란하며 실행자의 잠적도 용이하여,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선전의 피해를 당하기 훨씬 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 전자무역거래에서는 광고·선전 정보가 일방적으로 송부되어 올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부터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적으로 광고·선전 정보를 발하고 있는 상대방에 전달될 수도 있다. 예컨대 질문에 답하면서 화면을 바꿔가는 형식을 취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이들 질문의 회답이 즉시로 사업자측의 서버에 반송되고 축적되어 간다. 이 경우 소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다 하여도 소비자의 예측을 넘어 이들 정보나 데이터가 상대방에게 이용되어 버리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다면 전자무역계약에서 계약 유인의 형태로는 광고·선전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수입업자의 우편 ID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업자측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전자우편을 송신하여 수입업자에게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일단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홈페이지나 사이버 숍에 접근한 후라면, 예컨대 컴퓨터 게임과 같은 수법으로 수입업자의 흥미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욕망을 부채질하는 방법으로 수입업자를 무역계약으로 유인해 가는 것과 같이 접근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수입업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계약에서 무역계약의 유인을 검토할 때는 광고·선전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에 의한 적극적인 권유행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39]

제2절 전자무역계약의 성립

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전통적인 무역거래와 비교할 때, 인터넷 무역거래 역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기본적 계약의 성립과정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다.

1.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시기

1) 전자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청약

(1) 청약과 청약의 유인 구분

청약에 있어서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도 많은 혼돈을 야기시키는 것중 하나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역거래방식에서 주로 사용되던 질의(inquiry), 회람서신(circular letter), 소책자(booklet), 카타로그(catalogue), 샘플(sample), 패턴(pattern), 명세서(description), 가격목록(price-list), 견적서(estimate quotation) 등은 청약을 위한 청약의 교섭단계로 볼 수 있다.[40]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과 함께 곧바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이 그 청약의 유인에 승낙을 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청약의 유인에 대하여 승낙하는 것을 오히려 청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전통적인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이러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분이 매우 모호하여 해석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전통적인 무역거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무역에 있어서도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보면, 홈페이지(인터넷 쇼핑몰)를 구축하여 개설하고, 상품에 대한 가격과 정보를 제시하였을 때 바이어가 상품

39) 정종휴, 시스템계약론, 정보산업 77호, 1988.9.

40) 양영환 · 오원석 · 양영두, 전개서, p.171.

을 주문하였다면, 이와같은 홈페이지상의 상품에 대한 가격과 정보가 바이어에 대한 청약으로 봐야 할지 또는 청약의 유인으로 봐야 할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만약 청약으로 본다면 수출업자가 판매량의 정확한 예측을 잘못하여 충분한 재고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홈페이지 상에 기재된 상품의 인도조건 등을 지키지 못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품이 조기 품절됨에 따라 상품의 수출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위와 유사한 거래인 우리나라의 방문판매법 제21조에서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주문행위를 청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청약으로 볼 경우 방문판매법 제21조에 위배된다.

그렇지만 인터넷 무역거래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면, 이미 행하여진 바이어의 주문 및 바이어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홈페이지 개설자 즉, 수출업자에게 자신의 사정에 따라 계약의 성사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이 되어 수입업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수입업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 또 이처럼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경우 신속성을 요하는 인터넷 무역계약에서는 합당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수인의 보호와 무역의 신속성 차원에서라도 매도인의 상품 정보의 게시는 청약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선택한 상품의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포함한 메시지를 송신하는 것을 승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가격의 견적을 요구하는 거래 파트너에게 견적하는 것은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하는데 영미법상 가격의 견적은 그 자체가 청약이 될 수도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타사의 홈페이지 등에 판매할 상품에 대하여 광고하는 것 등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하며, 매수인이 이에 응하여 하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청약으로 간주하면 될 것이다.

위와 같이 수입업자(매수인)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인터넷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을 정할 수 있으나, 모든 인터넷 무역계약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기준들은 상황을 고려하여 청약인지 승낙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41].

2) 청약의 효력 발생기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은 청약의 효력은 청약자의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발생한다는 이른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격지자간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해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도달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 영미법 역시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착한 시점을 원칙으로 하여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청약자가 그 청약을 취소하고자 하여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착하기 전에 이를 회수한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비엔나 협약에서도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 청약을 회수한다면 그 청약이 철회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에서도 위와 같은 도달주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인 무역거래에 있어서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에 대하여 도달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청약의 의사표시가 수령자의 지배 가능한 영역 내에 들어오고 요지할 수 있을 때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이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2]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에서의 청약시 위와 같은 도달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자거래 기본법은 이러한 의사표시의 도달시점을 ① 수신자가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한 경우와 ②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가 도달시점이 되며, 만일 지정한 컴퓨터 등이 아닌 다른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

41) 장영하, 전자무역계약의 성립과 체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2, pp.20-30.

42) 정한용,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6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p.299.

자가 이를 출력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시점을 도달시점으로 간주한다.[43]

만일, 청약자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송신된 후 수신할 컴퓨터에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불도달 되거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위험은 청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44]

3) 청약의 철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청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이유는 ①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② 피청약자 청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대응청약(counter offer)이 있을 경우,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 ④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⑤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이 지난 경우, ⑥ 청약을 철회한 경우 등에 의한 것이다[45].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국가마다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영국법에서는 "청약의 철회는 날인증서에 의한 청약과 재정법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청약을 제외하고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없었을 경우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서는 "물품의 매입 또는 매각을 위한 청약으로서 상인에 의하여 서명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서면상에 청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취지를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서면상 명시된 기간 중 또는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

4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2항.

44)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 2항(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하여 전자문서를 송한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과 3조(작성자가 수신확인을 효력발생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의 규정을 근거하였음.

45) 앙영환 · 오원석 · 양영두, 전게서, pp.177-179.

한 기간 중, 약인의 결여를 이유로 하여 이를 철회할 수 없다"(제2-205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통일상법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철회불능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특정 기간 이후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16조에서는 "청약은 철회의 통지가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이상 계약이 성립되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청약을 유효기간 내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국법이나 비엔나협약과는 달리 미국의 통일상법전의 규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인터넷 무역거래에서 국가마다 다른 청약의 철회를 인정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한 계약에 있어서는 의사전달과정의 획일성 및 신속성과 즉각적인 결정을 요하는 거래의 특성상 청약자가 계약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경솔하기가 쉽고, 또한 컴퓨터의 마우스나 키보드 조작 실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 고객은 자신의 의사표시 부존재를 주장하거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청약자는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요부분에 발생했다는 점과 청약자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46] 그러나 청약자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청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 특히 무역업자가 아닌 개인 소비자에 의한 거래일 경우 당사자가 법률에 박식하지 않고,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대해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할 능력이 실제적으로 부재하는바 더욱 그리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한 계약에서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는 수신확인통지를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고객에게는 청약철회유보기간을 부여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

46) 민법 109조 참조.

2) 인터넷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승낙

승낙은 청약에 대칭되는 의미로서 피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대해 청약자의 청약 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의사표시로서 비엔나협약 제18조 1항에서는 "청약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를 승낙으로 하며 침묵 또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승낙의 방법에 대하여는 청약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형식이 필요 없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의 행위 당사자간의 자치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다.

승낙은 청약과 합치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계약의 성립시점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동일한데, 승낙의 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계약의 성립시점이 달라지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인터넷 무역계약에서는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로부터 발송되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를 발신주의와 도달주의로 구분하는데, 발신주의란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된 때 그 계약이 성립됨을 의미하고, 도달주의란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에 있어서는 통신기술상의 이유 때문에 승낙에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발신주의를 채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달주의를 채택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을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격지자간의 계약으로 봐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1) 대화자간 또는 격지자간의 계약 해석여부

인터넷 무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체결된 무역계약이 대화자간의 계약인지, 아니면 격지자간의 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대화자간 계약에서의 효력발생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때 성립하여 도달주의를 취하지만,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신할 때 성립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는 대화자간인지·격지자간의 계약인지가 쉽게 구분되지만, 인터넷 무역계약에서는 의사표시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화자간의 계약인지 격지자간의 계약인지의 구분이 용의하지 않다. 예를 들면 화상회의나 채팅과 같은 것은 양당사자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향 통신과 동일하다고 규정하여 대화자간의 의사표시라 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반면 E-Mail 이나 전자게시판을 통한 계약은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편지나 팩스를 통한 계약방식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에 격지간의 계약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47]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격지자간인지 대화자간인지의 판단 기준은 거리적, 장소적 관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적 관념에 의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48] 거리적, 장소적, 시간적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직접적 통화나 신호에 의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49]

다만, 위와는 달리 E-Mail 이나 전자게시판 등을 통한 인터넷 무역계약의 경우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격지자간 계약에 비하여 전송속도가 빠르고 거의 실시간 서비스에 가깝다 하여 대화자간 계약으로 간주하자는 견해도 있다.

---

47) 김종철, 전게논문, p.293.

48) Micheal S. Baum and Henry H Permitt, Electronic contract, Publishing and EDI Law, willy publishing 1991. p.324.

49) 김종철, 전개논문, p.293.

(2) 대화자간 계약에서의 효력 발생시기

대화자간 계약에서의 승낙의 성립시기는 일반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대화자간 계약이란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전화나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11조 1항) 또 영국법에서는 전화를 통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하는 경우 이를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법 역시 대화자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을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무역계약에서 화상회의나 채팅과 같은 것은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양당사자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으나 쌍방향 통신과 동일하다고 규정하여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인정, 도달주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격지자간 계약에서의 효력 발생시기

우리나라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격지자간 계약의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발신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은 승낙의 통지를 우편함에 투여하거나 전보를 전신구의 창구에 접수했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미법도 역시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을 때, 즉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한국법과 영미법의 차이점은 승낙의 우편 또는 전보가 불착, 지연된 경우 우리나라 민법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발신과 동시에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립되고, 우편이나 전보가 불착하거나 지연되어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무역계약에서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우편이나 전보 등을 이용하여 체결된 것을 말하고, 인터넷 무역계약에서는 E-Mail을 통한 계약이나 아니면

쇼핑몰 등에서 클릭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 그리고 기타 게시판 등에 상품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한 격지자간의 무역계약은 인터넷에서 전자문서가 거의 동시적인(Virtually Instantaneous) 서비스에 의해 전송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역에서의 격지자간의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계약이 체결된다. 특히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실시간(Real-Time)으로 전송될 것을 감안한다면 인터넷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격지자간의 의미는 쇠퇴할 것이고, 결국은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은 현행 민법 제111조가 적용되어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 등에 전자적 의사표시가 입력된 때, 그리고 만일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전자적 의사표시가 입력된 때[50]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것이다.

UNCITRAL 모델법 역시 제15조에서 전자문서의 수신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신자가 전자문서(데이터 메시지)를 수신할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 "수신은 ①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 ②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시스템이 아닌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수신자에 의하여 검색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또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은 전자문서가 수신자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거의 일치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인터넷 무역계약에서의 승낙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점에 대하여, 인터넷통신 속도가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의 격지자간 계약에 비해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송속도가 훨씬 빠르고 신속하여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계약의 성사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문서의 도착여부 등)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타당하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 서비스는 완벽한 실시

50)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간(real-time) 전송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도착확인을 알리는 시스템이나 메시지의 저장이나 재전송 등에 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에 따라는 발신주의를 인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전자무역계약의 성립장소

일반적인 국내거래에서는 인터넷 무역계약의 성립장소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준거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장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51]

계약의 성립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계약의 성립요소인 의사표시가 다른 법률이나 관습이 행하여지고 있는 지역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계약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또한 어떤 관습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하는 점에 관련하여서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당사자가 그 준거법규를 사전에 선택하여 놓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그 준거법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성립자의 법규에 의해 규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격지자간에 계약에서는 특히 그 준거법규의 문제와 더불어 계약의 성립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계약 성립의 장소가 문제로 되지는 않으나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 및 재판관할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준거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의 성립 장소가 문제로 된다. 학설은 승낙의 효력발생시를 계약성립시로 보는데 이는 그 장소에서의 승낙의 행위가 단순한 거래교역을 구속력 있는 법적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므로 유효한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장소에서 계약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3항은 "전자문서는 각각 작성자와 수신자의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 · 수신 되는 것으로 보되, 영업장이 2개 이상인 경

51)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제5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p.25

우에는 해당 전자거래와 관련이 있는 영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본다."[52]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장소에 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3항을 유추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다.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문제점

의사표시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진술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의사표시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인터넷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인터넷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행하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사표시의 하자에 의한 문제점은 크게 ① 진의아닌 의사표시, ②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④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⑤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로 구분된다.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인터넷 무역거래에서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의사표시를 행한 당사자가 자신의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컴퓨터 상에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게 입력하여 상대방에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표시를 행한 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되어 진다.[53]

우리나라 민법 제107조 1항에서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

52)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3항.

53)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학술발표대회, 1998.12, p.24.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무역 거래에 있어서도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발생될 경우, 민법 제107조를 적용시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무역의 경우 준거법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2) 통정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정 허위의 전자적 의사표시의 경우, 컴퓨터간의 통정은 있을 수 없으므로 통정은 "자연적"인 방법이고, 이에 따라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4] 만일 인터넷 무역에서 E-Mail과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통정허위표시를 할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 제108조를 적용하여 무효로 해야 할 것이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인터넷을 통한 무역계약에 있어서의 의사표시상의 착오는 ①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매체의 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하자'란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표의자가 자신의 판단이 사실과 다름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55] 이는 표의자 자신의 의사와 컴퓨터상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인터넷 무역거래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특질상 단순한 키입력 착오나 마우스의 클릭 착오가 적지 않고, 거래의 전체가 되는 상품등 정보나

54) 정현우, 전게논문, p.40.

55) 김선광, 전게논문, p.25.

계약조건, 기타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무엇을 얼마만큼 계약할 것인지 등의 판단이나 결단을 서둘러야 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컴퓨터 상에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하였다 할지라도 통신망을 통한 전송과정에서 시스템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전자문서가 변질 될 가능성도 있다.

(1) 입력된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입력된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표의자가 컴퓨터 상에 의사표시를 입력하기 위하여 조작하는 과정에서 조작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컴퓨터 이용자가 그의 결심과정에서 특정 사정에 대한 옳지 못한 관념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하여 이러한 옳지 못한 관념을 갖는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급되어야 한다.[56] 법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가 불가능하다.[57] 따라서 정확하지 못한 데이터가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취소가 가능할 경우, 본 데이터를 보고 주문을 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무역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신속성에 위배된다. 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입력된 데이터는 이 홈페이지에 방문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하자 또는 착오의 결과로 발생된 의사표시에 대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된다.

(2)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하자가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상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표의자가

56)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12, p.140.

57)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8, p.115.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착오가 발생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전자매체의 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착오로서, 대부분 표시상의 착오로 취급하고 있다.[58] 이처럼 표시상의 착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법 제109조에 의거하여,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한, 착오가 발생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4) 사기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란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의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악의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59] 강박이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협함으로써 공포심을 자아내게 하여 그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① 우리나라 민법 제110조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1조)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조).

---

58)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12, p.143.

59) P.S. Atiyah,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4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1989, p.236.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인터넷 무역거래에서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강박에 의한 인터넷상에서의 의사표시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다는 것 외에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의 사기·강박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민법의 규정들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이다.[60]

5) 무권한자 또는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방식에서는 데이터의 복제나 무단 변경이 쉽고, 타인의 패스워드 등을 해킹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개발·사용되지 않는 이상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인터넷 무역계약은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거래방식에서 사용하던 대화자간의 계약과는 달리 홈페이지상에서 클릭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격지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회원제가 아닌 이상 무권한자인지의 여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인터넷 무역거래에서 의사표시상에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로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것이 바로 해킹 등에 의한 타인의 패스워드 등을 불법적으로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책임의 귀속문제와,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견대리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인터넷 무역계약에서 무권한자에 의한 의사표시와 함께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문제가 된다. 무능력자에 의한 인터넷 무역거래는 규모가 큰 무역 대신에, 상대방의 쇼핑몰에서 소량의 상품을 구매하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무능력자는 미성년자(민법 제5조)와 한정치산자(제9조), 금치산자(제12조) 등이 있는데, 인터넷 상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미성년자의 식

60) 정현우, 전게논문, p.40.

별이 가능할지 몰라도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인지의 판단은 매우 어렵다. 특히 인터넷 무역거래가 국제 거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만일 인터넷 무역거래에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은 무능력자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에 대해 계약을 인정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내거래가 아닌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국가마다 관련 법이 다른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제3절 전자무역계약의 인증

1. 전자서명의 의의 및 종류

1) 전자서명의 의의

전자서명이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하나로서 그 이름대로 종래의 서명 날인과 같은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서명의 개념은 각국의 법률 및 문헌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적인 개념정의를 하기는 어려우나,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61]에 의하면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와 관련하여 서명자를 확인하고 당해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나타내는데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 첨부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한다"[62]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서명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61)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는 A/CN,9/WG.IV/WP.88의 내용중 Article 8(1)(b)의 일부내용추가를 제외하고는 Draft와 동일하게 2001년 7월 5일 채택되었다.

62)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Article 2(a).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을 말한다"[63]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서명 이외의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기술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64]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를 확인하고 전자문서가 서명자에 의해서 작성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전자서명의 필요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등의 정보교환이 크게 보급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경제활동의 안정적 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컴퓨터 보안에 대한 위협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 장벽의 하나이다. 전자상거래의 현재의 대중성 및 잠재적 이익과 함께 대립상황 즉 인터넷관련 사업확장은 침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적어도 서류거래와 같은 정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교환은 서류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류거래에서 계약 등을 행할 때에는 계약자들이 대면해서 계약행위를 하거나 격지자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전화에 의한 소리를 확인하는 등 상대방을 확인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의 교환을 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진정한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일할 수 없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진정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서류거래에 있어서는 진정성확인을 위해 서명 또는 날인이 있게 되

63)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

64)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는데 여기서 서명 또는 날인의 역할은 문서의 진정성의 추정이며(형식적증거력)[65], 계약서 등과 같은 처분문서의 경우 서명날인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66].

그런데 전자거래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에는 수기서명이나 날인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진정성확보와 무결성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전자서명이다.

3) 전자서명의 효력

(1) 전자서명의 증거법적 효력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67]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전자서명은 수기서명 또는 인장에 의한 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전자서명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같이 전자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서류의 진본확인의 측면에서 보면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에 한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자필서명은 컴퓨터에 의하여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학적 가치로 대체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

65) 어떤 문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이처럼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갖는다. 즉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뜻한다.

66) 문서내용이 요증사실이 증명에 이바지하는 효과로서 결국 문서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그 문서내용이 다툼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각 문서에 따라 구체적 · 개별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67) 전자서명법 제3조.

로 말미암아 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행 법률체계에 있어서 법률상 일정한 서명 또는 날인된 서면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산재되어 있다. 전자서명에 수기서명 또는 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가 일반 문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법에서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68]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의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에 행해진 것만을 의미하고 일반 서면에 기타 전자적방식으로 행해진 서명은 동법의 전자서명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전자서명과 이것이 첨부된 전자문서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자대리인에 의한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거래에서는 개별 데이터의 송수신시에는 사람의 행위가 개재하지 않고 작동하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즉 가상점포에 청약을 행한 경우 가상점포측이 확인메시지를 자동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형태에서는 확인메시지의 송수신시점에 가상점포측에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다. 이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가가 논점으로 될 수 있다.[69] 전자상거래는 전자대행수단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스템 전자거래와 비시스템 전자거래로 나

68)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69) Patricia B. Fry, The medium shall not be the message-securing transactions with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with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2000, p. 20.

눌 수 있는데 시스템 전자거래란 컴퓨터의 연산기능을 통해 사람의 의사의 결정 · 표시를 대행하는 전자대행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말한다.[70]

UETA는 이러한 형태에서도 계약이 성립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즉 UETA는 인간의 확인행위 등이 개재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발신되는 구조를 전자대리인이라 하고 전자대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 되는 것을 자동거래[71]로 정의하고 이러한 자동거래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대리인을 통해 교환된 메시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전자대리인이란 사람을 대신하여 일정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인공지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러한 전자대리인은 현재 전자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고객대신 쇼핑몰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72] 전자대리인은 전자대행수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2B편[73]과 UETA[74]나 E-Sign Act [75]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미연방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대리인규정에서 주간상거래, 해외상거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와 관련이 있는 계약은 그것의 형성, 작성 또는 교부가 하나 이상의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효력 또는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전자대리인의 행위가 이에 책임

---

70) 박희주, 인터넷 이용상의 사법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p.55.

71) 자동거래(Automated transaction)란 전자적 수단 또는 전자적 기록에 의해 일부 또는 모두가 실행 또는 이행되는 거래이고, 계약의 체결, 현존하는 계약 또는 거래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의 이행을 행하는 통상의 과정에 있어서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록이 개인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UETA, Article 2(2).

72) 최경진, 전게서, p.109.

73) UCC, §2B-102(9).

74) UETA, article 2(6).

75) 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이하 E-Sign Act라 한다), 2000년 6월 30일 서명, 2000년 10월 1일 발효한 미국연방 전자서명법.

질 사람에게 법적으로 귀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6]

즉 전자대리인은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는 달리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 어떤 일을 수행하는 중에 다른 대리 프로그램 또는 외부 세계와 협동하여 일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추론 능력을 갖추고 있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대리 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는 중요한 성격으로 맡은 분야 또는 영역에 대해 인공지능 기법이나 기타 기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77]

우리 법상 전자대리인에 의한 전자서명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전자대리인은 인간이 아닌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므로 전자대행수단이 단독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문서의 작성자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는 자[78]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의 대리인에 전자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79]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에서는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전자적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전자대리인에 의한 행위는 작성자에게 귀책됨을 명시하고 있어 미연방 전자서명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법체계에서도 전자대리인에 의한 전자서명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80]

---

76) E-Sign Act, sec. 101(h).

77) 주재훈, 인터넷 비즈니스, 비봉출판사, 1998. p.197.

78)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항.

79) 김재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전자상거래의 보안측면에서의 접근,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p.96.

80) 그러나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 단서에서 수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전자문서가 송신되었음을 당해 전자문서의 수신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수신자가 소정의 확인절차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전자인증

1) 전자인증의 의의

네트워크 내에서의 인증에 있어서 폐쇄형 네트워크의 인증문제와 개방형 네트워크의 인증의 문제는 다소 다르다. 폐쇄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의 문제로 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암호번호나 패스워드로 본인 확인을 하는 Identification 의 의미이다. 암호번호나 패스워드는 스스로가 Authentication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지는 데이터와 조합함으로써 접근하고 있는 자의 ID를 확인한다는 개념이다.

개방형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므로 본인의 진정성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제3자를 개입시키므로서 본인의 진정성을 제3자가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대게 Certification의 문제이다. 즉 Authentication 은 본인인증 · 자기인증에 해당하고, Certification 은 제3자 인증 그리고 Identification은 상대방인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자인증기술의 발전이나 가이드라인의 자율적인 취급의 촉진과 함께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타국의 인증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국제전자거래 등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인증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제표준을 확립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두어야 하며 상업등기제도 등 현행거래에서도 인증 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공적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인증제도나 전자공증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도 검토가 행해져야 한다. 소위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수기서명이나 기명날인과 적어도 동등한 법률효과를 부여해야 하고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의 명확화를 포함해서 그것을 위한 검토를 진행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상의 인증개념은 논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신되는 정보의 정당성 즉 정보가 부정하게 생성, 변경, 소멸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다. 인증확보는 정보통신일반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확보해야할 시큐리티의 하나이다.

2) 전자인증의 방식

컴퓨터내에서는 데이터는 모두 0과 1이라는 숫자열로 기술되며 이 숫자로 기술된 데이터를 평문이라고 부른다. 암호기술은 이러한 평문을 일정한 계산식 함수에 기초해 변환하는 것 및 변형결과를 원래의 평문으로 재변환 하는 것 (역함수)을 말한다. 즉 암호기술은 해독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판독하기 힘든 정보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변환을 위한 함수를 알고리즘, 변환을 위한 보조변수(파라미터)를 키라 부르며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다른 키나 다른 평문에 대해서는 다른 변형결과가 나타난다.[81] 즉 알고리즘이 공개되어도 키를 비밀로 해두면 변형결과를 재변환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디지털 서명은 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인증확보의 방법이다.

중요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를 암호화하고 또 암호화된 정보를 인가된 사용자가 해독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가장 경제적이며 안전한,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 되는 현대의 암호기술은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으나 키는 공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알려진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평문과 키를 섞어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 키를 모른다면 원래의 정보를 회복할 수 없도록 하며, 반면에 키를 알고 있다면 암호문에서 원래의 정보를 손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암호방식은 전자거래에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암호화는 그 자체로도 기밀성 확보 등 보안요건을 충족하지만 한편으로 암호방식은 전자서명을 생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암호화방식은 키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암호화 및 복호화에 동일한 하나의 키를 사용하는 암호방식을 공통키 암호방식이라고 하며 공개키와 비밀

81) 평문이 다른 경우에 변형결과가 다른 성질은 무결성 확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키의 두 개의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방식을 공개키 암호방식이라 한다.

암호기술의 사용목적은 암호방식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즉 공통키 암호방식[82]은 임의의 길이의 메시지의 암호화, 즉 데이터의 비밀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 공개키 암호방식[83]은 짧은 메시지의 데이터의 비밀과 데이터의 진정성과 무결성의 보증과 공통키의 교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공개키 암호방식의 기술에 의해 새로운 인증방식이나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각종 응용이 가능하다.

(1) 공통키 암호방식

안전한 암호시스템에서 복호화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암호문을 평문으로 재변환할 수 없는데 이 때 공통키 암호방식은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 하는 키가 동일한 암호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암호화키와 복호화키로 쓰이는 비밀키는 송신자와 수신자 둘 이외의 제3자는 알 수 없다. 공통키 암호방식은 1970년대 초부터 상업적인 통신망에서 이용되어 왔는데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공통키 암호방식은 DES(Data Encryption Standard)[84]방식이다. DES 방식은 1974년 미국 상무성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IBM이 개발하였고 1977년 미국 연방암호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DES 방식은 특히 금융분야의 응용에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각국은 외교 및 국방 등의 기밀 정

82) 공통키 암호방식은 대칭적 암호방식 또는 비밀키 암호방식이라 불리기도 한다. 김재철, 앞의 논문, 30면.

83) 전자서명법 등에서는 비대칭적 암호방식이라 규정하고 있다.

84) 미 상무성 표준국이 1977년에 공표한 암호 알고리즘이다. NBS는 73년에 표준암호알고리즘을 공모하여 응모안 중에서 IBN 의 제안을 DES로 채용하였다. 미 규격협회(ANSI)도 동 알고리즘을 규격화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도 DEA1으로서 국제규격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후 ISO의 DEA1 표준화작업은 NSA(미국가안전보장국)의 의향에 따라 87년 봄에 중지했다. 단 이미 DES에 의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은행업계가 DES의 표준화를 강력히 주장하여 ISO는 은행시스템의 표준안으로서 DES를 채용했다.

보의 암호화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공통키 암호방식은 우선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먼저 비밀리에 양자간의 공통의 암호화방법을 결정하고 발신자가 송신해야할 문서를 당해 암호화 방법에 따라 암호화해서 송신한다. 다음으로 수신자는 암호화된 송신문을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하여 해독해서 평문으로 돌릴 수 있다. 이것을 복호화라 한다. 이 공통키 암호방식에 의하면 특정한 비밀키를 공유하는 통신당사자간에 암호화와 복호화를 쌍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 암호화방식에서는 송수신자 모두가 같은 비밀키를 알고 있어서 송신자가 비밀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수신자는 같은 비밀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복호화한다. 그러므로 암호알고리즘이 공개되어도 비밀키를 제3자가 추측하여 생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송수신자는 안전하게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공개키 암호방식

공개키 암호방식이란 페어로 된 비밀키[85]와 공개키와의 세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86]공개키 암호방식은 1976년 국가컴퓨터회의에 참석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Whitfield Diffei와 Martin Hellman 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공개키 암호방식은 공통키 암호방식과는 달리 두 개의 키를 이용한다. 즉 개인이 소지한 비밀키와 이에 대응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개키(Public Key)[87]가 그것이다. 대표적인 공개키 알고리즘은 RSA[88]와 타원곡선 암호알고리즘이 있다.

---

85) 공통키 암호방식이나 공개키 암호방식 모두 비밀키라는 동일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전자는 Secret Key임에 대해 후자는 Private Key 로서 전혀 다른 내용이다.

86) 송익진·박상봉, 전자상거래 보안기술, 정보통신연구, 제12권 제1호, 1998, pp.2-3.

87) 공개키는 분명히 일반에게 공개되어도 지장이 없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널리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이 전제로 되고 있는 뜻은 아니고 그러한 명칭에 의해 오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등록키라고 칭하는 쪽이 공개키의 성격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88) RSA 공개키 암호알고리즘은 1977년 Ron Revest, Adi Shamir, Leonard Adleman 이라

이 암호방식에서는 예를 들면 A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A 고유의 비밀키와 공개키의 페어를 사전에 작성해 두고 비밀키를 A가 자신이 비밀로 관리하고 공개키를 네트워크상에 공개해서 배포해두므로 송수신자가 비밀키를 공유할 필요가 없다. 즉 모든 통신에서 공개키만이 사용되고 비밀키는 전송되거나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키가 통신 채널상에서 도청되거나 누설될 위험이 없다. 또한 여기서는 가입자가 n명인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키의 수는 2n개이고 실제로 비밀리에 보관해야 할 키의 수는 가입자의 수와 같은 n 개이므로 키관리나 키분배 문제에서 공통키 암호방식보다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방식에 의하면 송신당사자의 조합이 변할 때마다 키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통키 암호방식과 비교해서 키의 수는 적어도 충분하게 된다. 또 공개키는 네트워크상에서 자유로이 입수할 수 있어 공통키 암호방식과 같은 수수의 곤란성이라는 문제점도 회피할 수 있다. 다만 공통키 암호방식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비밀키가 암호화 기능을 하는 경우 암호문서의 수신자는 송신자가 비밀키에 대응하여 공개한 공개키로 복호화 함으로써 진정한 당사자로부터 문서가 수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복호화 기능을 하는 공개키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방식은 인증기능을 수행하며, 디지털 서명을 구축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평문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법과 평문을 해쉬함수로 요약해서 그 요약 추출물을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다.

즉 평문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송신자 A 의 비밀키로 통신메시지를 암호화한 뒤에 메시지를 수신자 B에게 송신한다. B는 A의 공개키를 복호화하는 것에 의해 A에 의해 서명된 메시지임을 확인하는 구조로 된다. 이 방식에 의하면 송신당사자의 조합이 변할때마다 키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통키 암호방식과 비교해서 키의 수는 적어도 충분하고 공개키는 네트워크 상에서 자유로이 입수할 수 있으므로 공통키 암호방식과 같은 비밀키의 안전한 전달의 곤란성이라는 문제점도 회피할 수 있다.[89]

는 세명의 수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방식으로서 이들의 머리글을 따서 RSA 방식이라 한다. 이 알고리즘은 현재 공개키 암호기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방식은 공통키 암호방식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큰 용량의 파일을 암호화하는데 공개키 암호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못하므로 이 문제는 공개키 암호방식과 일방향 해쉬함수[90]를 이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즉 평문을 일방향 해쉬함수로 요약해서 그 요약추출물을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해쉬함수를 사용해서 송신자 A는 데이터의 요약추출물(message digest)을 생성하고 요약추출물을 비밀키로 암호화해서 수신자B에게 평문에 첨부해서 송신하게 되는데 이것이 디지털서명이다. 결국 디지털서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암호화된 추출물이 바로 기존의 서명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디지털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를 수신자 B에게 전달하고 그 후 수신자는 먼저 전달된 전자문서와 그에 첨부된 디지털서명을 분리한 후 디지털서명은 서명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복호화하여 서명자가 일방향 해쉬함수에 의한 요약추출물알고리즘에 의하여 생성시켰던 요약추출물의 형태로 환원시키고, 전자문서는 일방향 해쉬함수에 의한 요약추출물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신받은 전자문서로부터 다시 요약추출물을 생성한다. 그 다음 수신자는 디지털서명으로부터 복호화된 요약추출물과 자신이 전자문서로부터 생성한 요약추출물을 상호비교하여 이양자가 동일하면 디지털서명의 확인과정이 끝나게 된다.

여기서 수신자 B는 서명자의 공개키로서 디지털서명의 복호화에 성공함으

89) Benjamin Wright and Jane K. Winn, Law of Electronic Commerce, 3th ed., Aspen Law & Business, 2000, § 3.06[3].

90) 일방향 해쉬함수란 수학적으로 일방향으로만 가능한 계산방법을 사용하는 암호화방법이다. 일한 해쉬함수를 이용하는 이유는 상당히 긴 문서를 암호화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 될 뿐만 아니라 문서전체를 보안할 필요가 없다면 문서전체에 대해 복잡한 암호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긴 문서의 경우 중요한 점은 보안이 아니라 문서의 무결성, 즉 당해 문서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의 무결성에 대한 보장만 있다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보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서의 경우 문서자체는 해쉬값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하고 문서의 평문과 암호화된 해쉬값을 전송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황희철,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정보법학, 1998, p.303.

로서 이 디지털서명이 서명자 A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진정성이 된다. 이는 서명자의 공개키에 의하여 복호화되는 것은 오직 서명자의 비밀키에 의하여 암호화된 것이기 때문이며 만일 진정한 서명자가 아닌 다른 자가 사칭하여 전자문서에 디지털서명을 첨부하여 송신했다하더라도 진정한 서명자의 개인키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면 수신자로서는 서명자의 공개키로서 그 디지털서명을 복호화하는데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한 수신자는 서명자의 공개키에 의하여 복호화된 요약추출물과 스스로 일방향 해쉬함수에 의한 요약추출물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생성시킨 요약추출물 양자를 비교하여 그 동일함을 확인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내용이 디지털서명이 생성된 후 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디저털서명이 생성된 후 그 전달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서명자의 공개키에 의하여 복호화된 원래 요약추출물과 수정된 본문으로부터 생성된 요약추출물은 동일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는 일방향 해쉬함수에 의한 요약추출물알고리즘에 따르면 상이한 본문으로부터 동일한 요약추출물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동일한 본문으로부터 유일하고도 완전히 동일한 요약추출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서명에 있어서 서명은 암호화된 요약추출물이라는 전자적 기록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공개키방식은 송신내용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신자가 누구인가, 환언하면 실제로 데이터를 송신한 자와 당해 데이터에 기재된 자가 동일인인가 하는 본인확인과 송신된 데이터내용이 송신도상에서 변경되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3) 전자인증의 필요성

현실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확인의 방식으로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방식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또 거래내용의 확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공정증서 작성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거래에서는 현실거래

에서 이용되는 이러한 당사자 확인 및 거래내용 확인의 방법이 그대로 이용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 전자공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인증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 역시 현실거래에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은 현실거래에서 인감이나 서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실거래에서 인감의 증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인감증명법이다. 인감증명은 전자거래에서 서명키의 인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감증명법은 1997년 말 정보화에 부응하여 인감을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카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하고 91) 인감증명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파일을 수록할 수 있고 이를 비치할 수 있으며 또 신고인감을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 ·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2) 또 특정인이 소지하는 인감과 인감파일에 수록된 신고인감의 일치여부를 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증명기관에 하게 되는데 인감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러한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원의 제출절차는 전자서명의 인증에서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법체계상 인감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이 존재하지만 서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증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서명을 인정하고 있을 뿐 이다.93)

인증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제도를 인감증명제도와 유사하게 접목할 수는 있지만 인감증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전자인증기관의 성격이 동일하게 되기는 어렵다. 전자서명에 대하여 공적기관이 아닌자가 행하는 인증행위는 법적인 의미에서 인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은 공적기관이 아닌 자가 행한 것이라고 하여도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

91) 인감증명법 제3조 제4항.

92) 인감증명법 제4조 제4항.

93) 김은기,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 통권 제272호, 1999, pp.62-72.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 · 증명하는 행위를 인증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증을 전자인증이라 부른다.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서 말하는 서명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전자서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날인이나 서명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인증은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자서명은 인증함으로서 누가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 전자문서의 존재 나아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며, 셋째, 전자서명의 인증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당사자의 승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전자인증은 단순히 전자서명을 인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다면 전자문서를 누가 작성하였고 또 전자문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

전자인증의 성질은 어느 주체가 전자서명의 인증을 행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일, 공적기관이 이를 담당한다면 현재로서는 아직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감증명과 같은 성질 및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민간기관이 전자서명의 인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감증명과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전자서명검증키와 이를 소유하는 자 사이의 귀속관계를 공적기관이 아닌 자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94]

공개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한 서버를 설치하는 제3자기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인증기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서 첫째, 인증기관의 담당자의 문제로서 인증기관을 설립할 때에는 공개키등록신청자의 본인 확인사무가 엄정하고 공정성, 중립성이나 공개키의 관리 등에 관한 보안이 확보되고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보호가 의도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을 것, 둘째, 유즈와 인증기관 사이에서 귀책사유나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고 및 부정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손실부담의 규칙 책정, 셋째 일정한 경

94) 김은기, 전게논문, pp.62-63.

우에 정부에 암호키를 인도하는 암호키 기탁제도[95]와의 관계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의 확보 및 검열의 금지의 취지와 국제적연대라는 관점에서의 검토의 필요성, 넷째 인증기관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작성의 필요성이라는 점이 이다. 특히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부르고 있는 바이다.

3. 인증기관

1) 인증기관의 의의

서명자의 공개키가 서명 자신의 것임이 객관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수신자가 서명자의 공개키를 이용하여 확인과정을 거치고 무작정 그 결과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서명자가 아닌 다른 이가 명의도용이나 사칭을 하면서 제공한 공개키를 본인의 진정한 공개키라고 언제나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서명이 서명방법으로서 진정성과 무결성 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명자의 공개키가 진정한 서명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디지털서명이 제 기능을 다하는데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서명자와 수신자 양자 모두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증기관이다.[96]

---

95) 키기탁(key escrow) 및 키회복(key recovery)이란 암호키의 복사나 암호키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3자에게 기탁해두고 수사상의 필요가 있는 긴급시에 그것들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6) Michael A. Froomkin, The Essential Role Trusted Third Parties in Electronic Commerce, Oregon Law Rev. 1996, pp. 55-56; Warick Ford, computer Communication Security: Principle, Standard Protocols and Techniques, 1994, pp. 93-101; Michael S. Baum,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ederal Certification Authority Liability and Policy: Law and Polity of Certificate-Based Public Key and Digital Signatures, 1994, p.5.

즉 인증기관이란 가입자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 주고 디지털서명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개키와 개인키의 조합이 그 가입자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만한 제3자[97] 또는 인증서[98]를 발행하고 전자서명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 또는 인증서를 발행하거나 전자서명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또는 자연인[99]을 말하며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업적, 비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신뢰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인증기관은 명의도용이나 사칭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서명에 관련된 관계당사자들 모두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는데서 도출되었다. 즉 공개키 암호방식을 이용한 전자서명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의 존재는 불가피하게 인증기관의 존재와 이러한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전자인증을 행하는 기관인데 전자서명법상으로는 인증기관으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을 인증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인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하의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이 아닌 비공인인증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100]

ABA Digital Signature Guideline 에서는 인증기관의 의무로서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유지할 것, 중요한 인증업무준칙(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CPS)[101]에 관련된 사항을 개시할 것, 본 가이드라인에 정한 의무

---

97) Thomas J. Smendinhoff, op. cit., p. 47.

98) 인증서(Certificate)는 서명자와 서명생성데이터 사이의 연계를 확인하는 데이터 메시지 또는 기타 기록을 의미한다.

99) DIRECTIVE 19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1999 on a Community framework for electronic signatur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0, L14. Article 2. 11. 전자서명의 공동체의 프레임 워크에 관한 지침(1999/93/EU), OJ L13, 19.1 2000, p. 14.

100) 김은기, 전게논문, pp.63-64.

101) 인증기관이 인증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신뢰성,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보안정책, 약관 및 외부와의 신뢰관계 등에 관한 상세를 규정한 문서를

에 따라 운영을 하고 또 등록자 및 그 발행에 관한 증명을 신뢰한 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데 충분한 재정적 책임이 있을 것 등의 일반적인 의무이외에 등록자의 비밀키를 보관하는 경우의 책임, 각종의 기록보존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102]

이중 인증기관의 재정적인 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인증기관의 책임범위는 인증에 의거한 거래의 가액에 미친다는 규정과 수신자가 전자서명에 의거하는 경우에는 증명에 의거하는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뜻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가이드라인이 인증기관의 부실표시에 기초한 배상의무의 범위를 거래가액에 미친다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특히 이 책임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에 의한 개시에 의해 미리 인증서를 이용하는 거래에 대한 책임의 상환을 통지해두는 방법도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책임한정의 방법이 인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인증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인증기관의 과오에 기초한 책임의 태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고려가 실무적으로 정착할지 여부, 입법론의 검토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 등 다양한 고려가 행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ABA Digital Signature Guideline 제3조 제8항은 인증기관의 증명의 표시사항으로서 수신자에게 통지를 행하고 있는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기관은 가이드라인이 적용해야 할 전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서명자는 증명에 기재된 공개키에 대응하는 비밀키를 사용하고 있을 것, 서명자의 공개키와 비밀키는 한 쌍의 키일 것, 증명의 모든 정보는 정확한 것일 것(단 인증기관이 특정의 정보의 정확성은 확인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등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고 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에는 유효하다고 된 일시 및 실효하는 일시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표시에 의해 인증기관은 표시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인증기관의 책임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규정으로 된다. 이외에도 공개키의 등록의 취소, 사용의 정지 등의 키의 취급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말한다.

102) ABA, Digital Signature Guideline, 1.35.

2) 인증기관의 종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인증관련당사자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다른 의도를 가진 인증기관이 아닌 실제 인증기관의 공개키임을 인증관련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한 방법이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임을 확인하는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인증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인증기관의 공개키의 유효성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103]

인증기관과 그 인증기관 자신의 공개키의 귀속에 대한 증명은 논리상 다른 인증기관이 맡아서 수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의 해결방안으로서 인증기관 상호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그러한 증명을 행하는 방법과 상위인증기관과 하위인증기관이라는 계층적구조를 두어 상위인증기관은 하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상위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는 다시 최상위인증기관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으로 최상위 인증기관으로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 된다.

계층적구조에 관한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한 입법례로서는 유타주의 디지털서명법[104], 플로리다주의 전자서명법[105], 독일의 디지털서명법, 일본의 전자서명법 그리고 한국의 전자서명법 등이 있다. 한국의 전자서명법 제24조, 제25조에서는 정부가 설립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106]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를

---

103) Warwick Ford, Advances in Public-Key Certificate Standards, SIG Security, Audit & Control Rev., 1995, pp. 9-10.

104) Utah Digital Signature Act, 46-3-202.

105) Florida Electronic Signature Act of 1996, Section 6.

106) 한국정보 보호진흥원은 정보화촉진 진흥법 제14조의 2에 의해 1996년 4월에 설립되었다. 한국정보보호 진흥원의 임무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 및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 제도 및 기술을 연구개발람으로써 정보화촉진에 이바지함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최상위인증기관으로서의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의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는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

두어 이를 최상위인증기관으로 하여 인증기관의 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계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서의 전자서명·전자인증의 법제도의 확립은 늦어졌지만 많은 주에서는 주법으로서 전자서명·전자인증법이 이미 성립되어 있다. 거의 모든 주가 민간인증회사의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업을 인정하고 있고 주당국에의 영업허가는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유라고 해도 유타주와 같이 인증기관이 최저한으로 만족해야 할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주가 있는 반면 메사추세츠주와 같이 특히 기준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 주도 있다. 요컨대 원칙자유는 법제화가 진행하기 전부터 민간의 인증회사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인허가제로 인증사업자의 경쟁이 제한되면 인증기술의 개발이 진행하지 않게 된다는 시장중시의 고려에 기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수평적구조는 복수의 인증기관이 상위하위의 계층을 형성하지 않고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각 인증기관은 자기가 발행하는 인증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담보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인증기관은 최상위 인증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일국내의 문제라면 계층적구조가 타당할 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국가간의 문제로 되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 즉 국가주권이나 일국정부의 정보의 보호를 고려하면 하나의 국제인증기관을 설립해서 신뢰하도록 각국에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최상위인증기관이 서로 인증하는 것에 의해 개개의 계층구조를 연결하는 모델이다.

인증기관은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y), 발행기관(issuing authority) 및 Repository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등록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증시스템에서의 등록,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는 인증시스템내에 존재하거나 시스

법상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고 하여 국가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인증기관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증기관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인증서의 목적에 관한 사실을 입증하는 디지털인증서를 발행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템을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다. 인증기관과 원거리에 있는 서명자들을 위해 인증기관과 서명자 사이에 등록기관을 두어 인증기관 대신 서명자들의 인증서 신청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하는 즉 본인확인을 행하는 기관이다. 즉 등록기관은 인증서의 발행심사를 하는데 이때 등록기관은 인증서발행 대상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명자들의 신분과 공개키 등의 인증서 신청양식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서명키로 인증서 신청양식에 서명한 후 이를 인증기관에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증기관의 웹서비스나 인증서배포, 인증서 상태확인, 인증서 폐지목록의 배부 등의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발행기관은 등록기관의 발행심사결과에 따라 등록키인증서의 발행 및 그 유효성을 증명하는 업무를 행한다. 즉 발행기관은 인증서발행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해서는 안되며 인증서발행심사를 행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행해서도 안된다.

Rerpository 는 인증서 및 메시지의 보장과 관련된 메시지의 저장 · 검색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가입자 및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107]을 공개한다. Rerpository 는 인증서 및 인증서폐지목록의 갱신상황에 대해 인증업무준칙 등에서 정한 기간내에 그 내용을 갱신해야 하며 최근에는 인증서의 실효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서폐지목록에 대신하는 기능으로서 OCSP(online certificate status protocol)[108]가 되거나 어떤 시점에서 어떤 인증서가 유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DVCS(data validiation and certification server)가 제창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상의 근거를 가지고 정비된 주민등록부 등에 기초해 엄격한 본인확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중에서도 주민의 편의성

107) 인증서는 인증된 공개키에 해당하는 비밀키가 노출된다든지 그 공개키의 소유자가 다른 도메인으로 옮기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전에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이러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들에 대한 목록을 생성해 PKI 내에서 관리한다. 인증서폐지목록은 형식에서 볼 수 있듯이 주기적으로 생성되며 배포주기는 인증정책과 인증서내에 명시될 수 있다.

108) 적절한 인증서의 상태(실효상태 등)를 온라인에서 확인시키는 프로토콜을 말한다.

관점에서 RA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적 · 기술적인 처리를 행하는 신뢰성이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이나 효율적인 운영의 확보관점에서 IA 기능은 하나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인인증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기관의 운영 주체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그 구축에 있어 해결해야할 다양한 과제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 불가결한 기반이라 고려된다.

4. 전자인증에 관한 입법동향

1) UNCITRAL

UNCITRAL 전자서명 모델법 전체의 특색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규정의 형식은 모델법이라는 이른바 소프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각국에서 국내 입법화되어야 한다. 결국 동 모델법은 각국의 국내입법이 제정될 표준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적용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 대신에 각국은 국제거래에 적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UNCITRAL 이라는 기관의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거래의 성격에 의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이 전혀 의미를 가지지 않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국제거래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에만 적용되는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법적 장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셋째 본 모델법은 상사거래에 적용된다. 소비자거래 및 경매 등 공공거래절차를 적용범위에서 배제시켰으나 통관절차를 고려하면 상거래와 공적거래를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각국의 입법에 의해서 가능한 한 공적거래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거

래에 관해서는 본 모델법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유리한 귀결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본법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법규범에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각주를 둠으로써 소비자거래를 일률적으로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피하였다.[109]

2) 미국

미국법조협회에서는 1996년 8월에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ABA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서명을 공개키방식에 의한 암호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타주가 이 가이드라인을 상당한 부분 참조하여 디지털서명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독일의 디지털서명법도 동 가이드라인에 기초하고 있다.[110]

ABA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부제 '인증기관 및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기반'(legal infrastructure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 and electronic commerce)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자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디지털서명 및 인증기관에 관한 법률적 · 제도적 검토하에 작성된 가이드라인이다.

ABA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서명이라 함은 공개키암호방식과 해쉬함수를 이용한 메시지의 작성으로서 그 메시지가 서명자의 비밀키에 의해서 작성되었는가의 여부를 서명자의 공개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1] 이는 디지털서명의 기능면에 착안한 정의이기도 하지만, 디지털서명이 거래 보안의 각 국면 중 적어도 진정성의 확인, 무결성의 확인

---

109)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Article 1.
이 법의 규정은 전자서명이 상사활동에서 사용되는 경우 적용한다. 이 법의 규정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110) Richard L. Field, The electronic future of cash: survey of year's developments in electronic cash law and laws affecting electronic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46 Am.U.LRev. 1997, p. 967.

111) ABA, Digital Signature Guidelines, Legal Infrastructure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 and Secure Electronic Commerce, Part 1.11.

기능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12]

이 디지털서명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유타, 워싱턴 주 등에서 디지털서명법이 제정된 상태이다.

3)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5울 31일 전자서명법이 공포되어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전자서명법의 제정목적은 전자서명에 관해 전자적 기록의 진정한 성립의 추정, 특정인증업무[113]에 관한 인정제도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에 의해 전자서명의 원활한 이용의 확보에 의한 정보의 전자적방식에 의한 유통 및 정보처리의 촉진을 의도하고 더욱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전자적기록으로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 본인에 의한 일정한 전자서명이 행해지고 있을 때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전자서명이란 전자적 기록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행해지는 조치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첫째 당해 정보가 당해 조치를 행한 자가 작성에 관계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것, 둘째 당해 정보에 대해서 변조가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자서명의 법적위치의 명확화이다. 전자적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본인에 의한 일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전자적기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 둘째는 인증업무에 있어 임의인증제도의 도입으로서 인증업무 중 일정한 기준을 갖춘 특정인증업무에 있어 서명자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임의인

112) 손경한, 전자상거래의 법적과제, 과학기술과 법, 1997, p.29.

113) 특정인증업무란 일정한 기술적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서명에 관해서 행해지는 인증업무를 말한다. 이호용, 일본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의 소개, 인터넷법률, 2000, p.165.

증제도를 두도록 하는 규정, 셋째는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정부가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조사업무, 교육, 홍보활동에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EU 전자서명 지침

EU역내의 전자거래법제의 통일을 위해 1998년에 계약법제에 관해서는 역내시장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어떤 법적측면에 관한 유럽회의 · 평의회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liament and council on certain aspect of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전자서명에 관해서는 전자서명의 공통구조에 관한 유럽회의 · 평의회지침안이 각각 발표되어 수정을 되풀이한 뒤 현재 역내시장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어떤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이하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U, 2000년 6월 8일)과 전자서명의 공동체의 프레임워크에 관한 지침(이하 전자서명 지침)(1999/93/EC, 1999년 12월 13일)으로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EU 각국에서 전자서명에 대해서의 입법작업이 진행하고 있고 가맹국에서 다른 규칙은 역내시장에 있어서 전자통신 및 전자상거래의 중대한 장벽으로 될 수 있고 EU 규모에서의 인증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서비스제공자(이하 인증기관)의 자격인정 스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인증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통일적인 규칙이 있다면 EU 내에서의 수용에 긍정적 요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전자서명의 사법상 및 민사소송법상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중요성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EU 전자서명지침은 전자서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전자서명과 고급전자서명으로 이원화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은 전자적 데이터로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를 말하며,[114] 고급전자서명은 서명자와 유일하게 연결, 서명자의 신원확인가능, 서명자의 통제하에 서명자가 유지가능 그리고 데이터메시지

114) Article 2(1)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가 변경된 사실이 나타날 정도로 메시지에 연결되어 작성되어야 한다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을 말한다.[115] 이러한 정의는 UNCITRAL 의 최종 전자서명 모델법의 정의와는 다르다.

UE 의 전자서명 지침은 전자서명에 대한 프레임워크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효력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은 서명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이상은 각국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다. 말하자면 EU 각국의 국내입법의 최대공약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U 전자서명 지침의 특징은 첫째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인터넷의 글로벌한 성격에 비추어 기술적으로 중립적인 어프로치를 취하고 디지털서명 뿐 만 아니라 전자서명 일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단일한 기술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넓게 전자서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116]

두 번째 특징은 최소한의 규제를 한다는 관점에서 가맹국은 인증서비스 제공에 대해 사전에 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임의의 인정스킴을 두는 것을 허용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그러한 스킴에 관련하는 모든 요건은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는 것이고 조화를 취한 비차별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117]

세 번째 특징은 전자서명의 사법상 및 민사소송법상의 효력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적격인증서(qualifies certificates)에 기초하고 안전한 서명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고급 전자서명은 각 가맹국이 수기 서명에 의해 충족되는 요건과 같이 전자적인 형태의 데이터와 관련해서 서명의 법적요건을 만족시키고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전자서명은 그것이 전자적인 형태로 행해져 있고 인정인증기관의 적격인증서에 기초하지 않은 것 또는 안전한 서명생성수단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닌 것 만에 의해 그 유효성 및 법적절차에 있어서

115) Article 2(2)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116) Article 2(1)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117) Article 3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가맹국은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118]

네 번째 특징은 데이터보호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각 가맹국은 EU 전자서명지침이 정하는 요구에 인증기관 및 그 인정당국, 감독당국이 따르도록 해야 하며, 각 가맹국은 개인 데이터를 데이터의 대상자로부터 직접 또는 대상자의 사전의 동의에 기초해서 인증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만 인증기관은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19]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인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규정으로서 각 가맹국은 무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신뢰를 따른 자에 대해서 인증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정해야 하며, 인증서의 용도가 인증서가 유효한 거래가치를 각각 제3자가 인식가능하도록 인증서에 제안했을 때에는 인증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그것에 응한 것으로 할 것을 인증기관에 인정하는 것을 가맹국에게 요구하고 있다.[120]

여섯째로 가맹국이외의 제3국과의 사이에서 상호실시성이 있는 인증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인증서의 상호인증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121]

5)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거래에 관련해서 1999년 7월 1일부터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어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조는 크게 전자문서, 전자거래의 안전, 전자거래의 촉진,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전자문서의 증거능력 및 보관, 송·수신 시기 및 장소,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이라

118) Article 5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119) Article 8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120) Article 6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121) Article 7 of EU Directive for Electronic Signature.

한다)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 · 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라고 하고 있으며,[122] 이러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123] 또한 전자서명의 개념을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이라고 정의하여 기술중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다른 법률에 그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고 하고 이러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124]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전자서명 및 그 인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에서 말하는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이라 정의되고 있어[125] 전자서명을 공개키 암호방식에 한정하여 이른바 디지털 서명만을 전자서명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전자거래기본법과 상치되고 있다.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서명이 당해 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126] 이처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

122)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123)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124)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125)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126) 전자서명법 제3조.

해서는 전자서명법이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127]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서명의 개념을 디지털서명을 포함한 다양한 전자적 형태의 서명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반해 전자서명법은 이러한 기술중립적 접근법을 채택하지 않고 디지털서명만을 전자서명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는 바 전자서명 관련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전자서명을 디지털서명에 한정하는 입법방법은 근시안적인 접근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128]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기술중립적으로 전자서명을 정의하고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전자서명방법으로 인정받는 디지털서명 정도의 신뢰성을 획득하게 되는 전자서명도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검토가 법무부와 정보통신부에서 행해지고 있다.

---

127) 김재철, 전게논문, p.58.

128) 손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저스티스」, 제33권 제2호, 2000.6, p.14.

제4장 전자무역계약에 수반되는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전자무역은 기존 무역을 대체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편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무역의 편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장애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무역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전자무역 기본인프라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전자무역 전문인력 인프라구조

1) 문제점

21세기에 들어와 전자무역이 도입됨에 따라 전자무역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 국내 5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조사한 전자무역 이용실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자무역 전문 인력을 5명이하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90%에 달하고 95%의 기업이 무역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무역실무 전문인력 및 전자무역인력 부족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9] 그리고 한국무역협회가 실시한 전자무역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전자무역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의 직원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 업체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을 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소기업은 무역 업무 종사자 중 인터넷 활용 직원의 비율이 50%미만인 기업의 비율이 52.7%로 나타나 인터넷 활용능력 및 무

129) 나도성, 한국무역업체의 사이버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26권 2호, 2001, http://www.ktra.org.

역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130] 무역실무에는 밝지만 인터넷 활용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인터넷 활용능력은 우수하나 무역실무를 잘 모르는 인력들이 대부분이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및 무역정보 인프라가 완비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활용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기의 상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2) 대응방안

전자무역 전문인력 부족 해소 대책의 하나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2000년 11월 19일 사이버 무역사 자격시험을 신설·실시하여 전문무역인력 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 전자무역이 우리 나라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고 세계적 전자상거래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많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전자무역 관련학과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기존의 무역관련 인력을 재교육하여 전자무역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전자무역의 확산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전자무역이 세계시장에서 자사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전자무역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국가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게 관련법 체제 정비 등 전자무역 기반조성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인터넷 통신 기본인프라 구조

1) 문제점

효율적인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의 설치가 필요하다. 인터넷 접속방식을 몇 가지 살펴보면 전화모뎀, LAN(local area network),

13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감, 2000, p.159.

ISDN, cable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전자무역 실태를 보면 인터넷 접속방식으로 전화모뎀을 이용하는 기업이 42.4%, LAN을 이용하는 기업이 39.4%로 전자무역의 통신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용선의 속도는 전화모뎀을 이용한 기업은 64kbps, LAN선은 128~512kbps, 그리고 ISDN 선이나 cable은 1.54Mbps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131] 한국무역협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아도 인터넷 사용을 위한 전용선 설치비율이 전체기업 중 40%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전용선 이용비율(38.5%)이 대기업(8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에 있다.

<표6> 전자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속 방식

(단위 : %)

	전 체	구 조 별			규 모 별	
		농수산물	경공업	중화학	대기업	중소기업
전화선	19.6	0	28.0	16.0	5.0	21.1
전용선	42.5	50.0	39.9	43.6	80.0	38.5
ISDN	17.6	7.1	24.5	14.4	10.0	18.4
CATV	1.2	7.1	0	1.6	0	1.3
ADSL	18.6	28.6	7.7	24.1	5.0	20.1
기 타	0.5	7.1	0	0.4	0	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감, 2000, p.160.

2) 대응방안

우리나라 인터넷 통신 인프라 구조의 현실을 볼 때, 특히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통신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전자무역에서는 특히 인터넷 웹사이트를 활용한다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기본적인 초고속 통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반 설치 및 이용비용을 감면시켜 준다든지, 또는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용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131) 나도성, 전게논문, p.238.

따라서 통신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중소기업들도 전자무역에서 대기업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물류 인프라 구조

1) 문제점

전자무역이 원활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해상운송 등을 포함한 국제물류 체제의 전자화도 필수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수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 등 5단계로 이루어진 물류산업은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물류 업계는 단순 기능별 서비스 중심의 사업에서 종합 기능의 물류 서비스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로 인해 항만도 끊임없이 통합된 물류체인상의 중요한 연계지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은 전자상거래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및 그리고 물류체인의 일종의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증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물류 hub로서의 커다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132] 남한과 북한의 분할, 서로 다른 운송시스템간의 효율적인 통합의 약화, 제한된 수의 항만 터미널 및 공항의 화물처리능력 부족, 화물의 높은 운송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근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를 거쳐서 통과하는 환적화물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따라서 지리적인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의 전파 속도에 비해 물류 업계의 움직임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미국 DHL이나 FedEX등의 선진 물류 전문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한 화물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 물류의 인프라는 전자상거래 성장에 발맞춰 구조를 개선할 만큼 제대로 구축되

132) Kor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Transforming Korea into a Logistics Centre for Northeast Asia ; Comparative Study of the Netherlands and Korea, 1998, p.56.

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국가 물류비용은 GDP대비 16.4%인 64조원으로 이는 미국의 GDP대비 10.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이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기 이전부터도 과도한 물류비 부담이 야기되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133]

하드웨어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 물류거점시설 등의 부족으로 수용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며, 도로부문의 편중적 화물수송분담구조와 물류부문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부족은 화물자동차의 공차운행거리율 증가 등을 야기시켜 비효율적인 물류흐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단기간내에 하드웨어 물류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비용 물류비구조를 완화하고 디지털 경제시대에 있어 새로운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류표준화 · 정보화 · 공동화 등 소프트웨어 물류인프라의 효율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서야 대두되기 시작했다.

물류장비의 표준화 및 표준물류 바코드 등의 미흡으로 시설공동화, 하역의 기계화, 일관 · 연계수송의 실현 등이 곤란한 실정이며, 업체간 상이한 물류시스템, 공동화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물류공동화 추진실적도 매우 부진하다. 또한 육상 · 해상 · 항공 물류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존 정보망간 효율적인 연계체계 미흡으로 물류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기존 정보망간 효율적인 연계체계 미흡으로 물류정보의 ONE-Step 제공이 불가능하고, 현재 선진국 물류업체가 상용화하고 있는 온라인 조회 · 주문 · 중계 · 위치추적 서비스 제공기능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물류산업에 있어서는 기존 화물 운송업체, 택배업체의 영세성과 제조 · 유통업체의 경쟁적 자가물류확충의 악순환으로 제3자 물류(TPL;Third Party Logistics) 시장 성장기반이 크게 제한되어 왔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필수적인 물류의 신속성 · 정확성 · 안정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34]

---

133)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 전자상거래 백서, 2000, p.229.

한국무역협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주로 EDI가 활용되고 있는 대금결제 및 물류 등의 단계에서는 대기업(20.0%)에 비해 중소기업(7.0%)의 경우 인터넷 활용의 성과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는 비용 및 인식부족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EDI 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치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2) 대응방안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화의 물리적 운송에 중요한 물류의 전자화가 필요한데, 종합적인 물류정보 서비스 즉 One-Stop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고,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 및 제도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촉진을 위해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비롯한 물류정보화가 요구되며, 아울러 제3자 물류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물류공동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류에 있어서는 온라인 상의 정보의 흐름속도가 아무리 빠르고 정보처리 및 전송절차가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연계적 운송체계가 유연히 되지 않아 오프라인에서의 재화의 물리적 운송에서 많이 뒤지는 경우 완벽한 물류체계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보아도 정보의 흐름과 재화의 물리적 운송간의 민감한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주변국에 비해 물류 Route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기존의 장점에다가 물류체계의 전자화가 잘 추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물류표준화 · 정보화 · 공동화 등 소프트웨어 물류인프라의 효율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

134) 산업자원부, 전게서, p.426.

제2절 법 · 제도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조세제도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1) 문제점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서비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비지의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전통적 상거래에서의 납세의무는 공급장소에서 발생하게 되며 대부분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시 공급장소는 소비장소와 일치하기 때문에 공급장소 과세원칙은 소비지 과세원칙과 합치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적 국제거래에서는 공급업자의 사업장 및 고정시설[135]이 소비자가 소비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 존재하지 않고도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장소와 소비장소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자적 무역거래의 증대로 인해 외국공급업자들이 많은 서비스를 소비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부가가치세 공급장소의 개념으로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국내공급에 대해서는 거의 과세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36] 즉 전자무역거래에서는 외국의 현지에 고정 사업장 및 자회사 등 특별한 경제활동이 거점을 갖추지 않고도 현지의 고객을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

135) 연방 직접조세법(Federal Direct Tax Law; FDTL) 제51조의 2에 의하면, 고정시설은 "기업의 사업활동과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관련된 사업의 고정된 장소"라고 명시되어 있다; Xavier Oberson and Lorenzo Piaget, 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ol 52 Issue 12, 1998, p.536.

136) 박광근, 전자무역거래의 제문제점에 관한 고찰, 대덕대 논문집 제17호, 1999.12, p.104.

함으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20% 또는 법인소득세의 50%가 인터넷을 통하여 회피될 수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방식이 기존의 여타 거래방식에 비해 훨씬 우위를 차지하게 될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OECD는 전자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조세방식을 제안한 바 있는데, 기존의 거래방식과 전자상거래방식에 동등한 세율을 부과하여 경제적 왜곡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137] 또한 OECD는 1998년 오타와 각료회의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기업들간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다국적기업 내부간, 특히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해지는 이전가격행위는 과세당국의 추적이 힘들어 이에 대한 과세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는 전자상거래 특징상 정보의 거의 동시적인 전달과 국가간의 물리적 국경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138]

거래 대상물 중 특히 디지털 콘텐츠는 국경이라는 장애물이 없이 외국 매도인에 의해 온라인으로 공급되며, 이에 대한 대금결제도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경우 조세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해 조세징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139] 따라서 국내소득이 있는 국외의 전자무역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재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140]

예를 들어 사이트를 처음 열 때 사업자 등록은 미국에 해 놓고 일본에 메인 서버를 설치한 뒤 정작 사용료를 징수하는 계좌는 유럽의 은행에 개설해 놓을 경우 어느 국가의 조세 체계에 따라 세금을 거둬야 할지 애매해진다. 즉 디지털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온라인으로 거래될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

137)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1998., pp.39-40.

138) Jonathan S. Schwartz,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and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ol 53 Issue 7, 1999, p.286.

139) Nicholas Imparato(ed.), Public Policy and the Internet ; Privacy, Taxes, and Contract, Hoover Institution Press, 2000, pp.56-57.

140) 박광근, 전게논문, p.286.

이익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가 최근 국가간 전자무역의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141] 전자무역에 조세를 부과하는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세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초기발전 단계에 있으므로 일종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으로 봐야 하며,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견해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일종의 세제상의 특혜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세부과 찬성하는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국가조세 원천의 약40%가 기업의 판매이익에 대한 조세부과로부터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조세당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므로 일반 오프라인 무역거래와 동일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전자무역거래에 세제상의 특혜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며, 이에 따라 상거래의 모든 형태가 온라인 편향적이 되어 오프라인 업체들은 영업기반을 잃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무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터넷 벤처기업들은 자본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전자무역거래에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전자무역 자체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특혜대우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유치산업" 대우를 받으면 전자상거래 산업 자체가 이러한 대우로부터 졸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태만히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142].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전자무역은 조세제도의 집행과 관련하여 경제행위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사용자 통제능력의 결여, 인터넷 사용자의 신분확인 수단의 비존재 등의 문제가 있다.

---

141) 주간동아 290, 전자무역으로 수출장벽 넘어라, 2001.6. 28.

142) Nicholas Imparato(ed), op.cit., pp.53-54.

(2) 대응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볼 때 전자무역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정책이 필요한데, 인터넷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국내에서 가진 접속점을 기능별로 파악하여 세수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리납세제도라든지, 또는 면세사업자나 비 사업자인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외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국가에 등록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납세관리인제도 등을 전자무역의 과세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소 막연한 대응책이지만 전자상거래와 기존거래방식 중 어느 쪽도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게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과세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세관제도

(1) 문제점

전통적 상거래에서 관세부과 대상이었던 재화가 전자적 무역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거래수단과 과세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일례로 소프트웨어, 영화필름, 비디오, 전자서적 등의 경우 우편주문이나 전화주문 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이 용이하므로 기존매체를 통한 거래가 전자적인 거래로 급속하게 대체된다. 이럴 경우 관세부과가 상당히 어려워지며 세관에서 수입 부가가치세도 부과될 수 없어 조세수입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며, 지금도 이것은 국제적 논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WTO의 입장에서도 특히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디지털 콘텐츠 등이 GATT의 범주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GATS의 범주로 분류 되어야 하는지 쉽지 않은 문제이다.[143]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볼 때 미국의 경우 모든 전자무역거래에 대하여 무관세를 하자는 입장에 있는 반면, EU 및 일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즉 미국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이중과세 부과를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144] 그러나 유형의 재화의 주문만이 인터넷을 '인터넷 자유무역환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터넷 비관세의 대상으로 무형재화나 서비스가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영상, 음악, 비디오 등 오락물 및 금융, 보험, 회계, 법률, 기술자문 등의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비관세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적으로 전송된 건축설계 도면의 경우 이것은 재화가 아닌 서비스로 보고 여기에는 관세가 부과되서는 안된다. 전자무역에서 재화 자체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경우에는, 인터넷 주문이 기존의 전화주문, 우편주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45]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판매된 물품들이 여전히 국경을 통과하여 물리적으로 배송된다면 현행 무역관련 WTO 협정에 따라 관세부과 등이 적용된다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국가는 전자거래가 재화라고 간주되는 한에 있어서만 관세와 다른 비용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표명하고 있다. 선결조건으로 전송이 명백하게 수입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거래가 재화로 규정되어 그 결과 관세가 부과될 수 있더라도 어떻게 관세가 결정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HS 표상에는 전자거래가 품목분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세관 목적의

---

143) 윤준형, 전자무역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45-49.

144) Catherine L. Mann, Sue E. Eckert and Sarah Cleeland Knight, Global Electronic Commerce: A Policy Prim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87.

145) 김종칠,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이행·종료에서의 법적 문제점,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1999.5, p.301.

품목분류는 전송되는 재화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HS는 전자거래를 분류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이는 HS가 재화의 품목분류표이기 때문이며, 콘텐츠 자체는 재화와는 달리 취급되어 그것은 오히려 지적재산과 가깝다. 재화의 품목분류는 일반적으로 그 재화의 특징적인 물질적 성질에 의존하며, 이것은 또한 정보재를 운송하는 중 아날로그 매체의 품목 분류시에 실제로 나타난다. 또한 디지털화는 품목분류를 더욱 어려운 문제로 만들고 있다. 실제적 운송매체를 가진 디지털 제품은 종전과 같이 물질적 외형이나 물질적 특성에 기반을 둔 제품형태로 특징화 하려는데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레이저 디스크는 컴퓨터에서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레이저 디스크 읽는 기계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카바하고 그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HS에서는 무형물질인 전력(electrical energy)을 HS 2716에 품목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 분류는 각 협약당사국이 채택재량을 가진 선택적인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전력에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146]

(2) 대응방안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물리적 형태의 재화(physical good)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하여는 무관세로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주문은 전자적 수단으로 행해지더라도 재화가 물리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기존거래방식과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여야 기존거래방식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OECD나 WTO 등 국제기구회의 등에서 우리 나라의 관세부과문제 관련 입장을 현실적으로 잘 반영시켜 국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HS는 관세의 징수와 무역통계를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므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관행이 계속 될 거라는

146) 이대복,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현황과 당면과제, 관세와 무역, 2001.7, p.15.

잠정합의가 있다고 보고, 통계의 수집은 전자적 전송의 구성상 어떠한 경우에도 곤란할 것으로 본다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품목 분류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나, HS상에 '운반매체 없는 소프트웨어도 기존의 재화와는 또 다른 형태의 재화로 분류되어 품목분류 및 관세부과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지적재산권 보호

1) 문제점

지적재산권법은 문학 및 예술 작품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대중의 이용간의 균형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대 정보사회에 급속한 변화에는 순응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다.[147] 이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특허권(patent right), 상표권(trademarks) 등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148]

미국의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UCITA)'에 의하면, 소프트웨어나 기타 형태의 디지털화된 정보는 재화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라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자체의 이전을 의미한다.[149]

최근 IT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국 냅스터 등의 저작권 소송과 비즈니스 모델 특허로 사활을 건 비즈니스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무역은 인터넷 특성상 적용범위가 전세계인 만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전통적인 재판관할권에 대한 법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무형무역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나 문학, 예술작품, 음반, 공연물 데이터베이스 등의 내용이 무방비상태로 전송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147) Jurgen Basedow and Toshiyuki Kono(ed.), Legal Aspects of Globalization ; Conflict of Laws, Internet, Capital Markets and Insolvency in a Global Econom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p.43.

148) Ian Lloyd, Legal aspec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Butterworths, 2000, p.129.

149) Catherine L. Mann, Sue E. Eckert and Sarah Cleeand Knight, op. cit., p.121.

있다. 즉 무제한적이고 완벽한 복제 능력을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의 결합은 정보기술이 그토록 급속도로 발전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던 기존 지적재산권법 관련 체계에 대해 일찍이 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매도인이 지적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이, 또 매수인은 위조된 것이 아닌 진정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전자무역의 거대한 잠재력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유명회사나 브랜드의 이름을 딴 도메인네임을 선점하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사이버 스쿼팅(cyber squatting)에 따른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도 '제3의 영토분쟁'이자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도메인네임의 분쟁은 일반적으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대립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상표권을 가진 기업과 인터넷상에서 도메인네임을 새로이 가진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2) 대응방안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는 유명상표의 도메인네임 선점에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처리기구와 절차 마련을 위해 '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와 'WIPO 유명상표 보호규범안'등 국제규범 형성작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도메인 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서는 '통일분쟁해결지침(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을 규정하고 있다. 동 기구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거절하고 이미 등록된 도메인네임을 말소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은 일반 도메인네임의 등록에 있어 선점방지책을 강구한 후에 국가도메인네임의 등록에 있어서도 같은 절차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게 될 것이다.[150]

국내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는 WIPO의 규범의 수용을 통해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제거 및 예방하고, 저작권 관련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상의 저

150) 장병주, 국가간 전자상거래 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관세와 무역, 2001.7, p.24.

작권자 권리보호와 저작물이 공정한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특허권 등을 비롯한 지적재산군 보호 정책과 인터넷 도메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벌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보안 · 신용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전자무역시스템의 정보 · 보안

1) 문제점

전자무역, 특히 결제시스템에는 언제나 무역정보보안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바이러스는 고전적인 개념의 위험은 차지하고도 많은 보안상의 위험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적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보가 전송되는 중에 전자적 정보를 불법으로 복사하는 것, 둘째로 정보저장 중 권한없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권한이 없는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것 등이 있다.[151] 기업 및 개인은 전자무역에서 자신들의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꺼려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전자무역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즉 전자무역에서는 위험이란 기밀자료의 손실이나 훼손의 가능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합법적 권한자의 영업수익감소와도 직결된다.

무역거래정보의 보안과 관련된 위험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직면될 수 있다. 먼저 매수인측의 위험으로는 악의의 웹사이트 구축에 관련된 위험을 예를 들 수 있는데, 특히 B2C 거래에서 매도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매수인

151) Jean L. Camp, Trust and Risk in Internet Commerce, MIT Press, 2000, pp.66-67.

의 ID, 패스워드, 신용카드번호 등의 매수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데 따른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매도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은 매수인이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신용카드 주인으로 위장하여 구매를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되는 위험 등이 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해킹기술들이 고도로 발전하여 관리자의 실수나 운영시스템의 실수를 악용하던 초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Packet Sniffing, IP Spoofing 등 고난도 해킹방법들이 등장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송수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단위는 패킷인데, 일반적으로 패킷들은 이더넷 케이블을 타고 전송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호스트가 B라는 호스트로 패킷을 보낼 경우 그 패킷을 이더넷에 보내고 그 패킷은 수신 주소의 호스트만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호스트 B가 아닌 다른 호스트가 그 패킷을 무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해커에게 전달해 준다면 아무리 네트워크 보안에 신경을 쓴 호스트라도 주변의 호스트가 공격을 당해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스니퍼란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한 호스트에서 실행되어 그 주위를 오가는 패킷들을 엿보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다음으로 IP Spoofing은 해커가 머물러 있는 호스트의 IP Address를 바꿔서 해킹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호스트 A와 B가 하드디스크를 공유하고 있고 그 둘 다 보안이 완벽하다고 할 때, 이 때 해커는 자신이 머물러 있는 호스트 IP 어드레스를 B의 어드레스로 위장을 한다. 그러면 호스트 화면에는 “duplicated IP address"라는 문장이 디스플레이 되고 호스트 B는 호스트 A에게 자신이 진짜 호스트 B라는 정보를 보내어 호스트 A와 같이 하드디스크를 공유하도록 시도한다. 성공하게 되면 해커는 호스트 A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기밀정보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152]

한편 무역정보 보안에 있어 인증기관, 그리고 법적 장치가 요구되는데, 기술특정적인(technology-specific) 법의 경우 공개키(public key)[153] 암호화를

---

152)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이버무역, 2000, pp.210-211.

153) 비대칭형 암호화방식(Asymmetric CryptoSystems)이라고도 하며, 1976년 미국 스탠포드대 W. Diffie 교수와 M. Hellman 교수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 방식은 두 개의 키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아무나 암호키를 이용하여 특정한 내용을 암호화할 수는 있지만, 해

요구하며, 반면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인 법의 경우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을 요구한다. 그런데 기술 특정적인 법의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데, 너무나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기술 특정적인 법은 재정 · 공포가 됨과 동시에 구식이 되어버리거나 수시로 개정이 될 필요가 많다는 것과, 그 법이 특정 기술을 옹호하게 되어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이 정부가 부여한 일종의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볼 수 있다. 기술 특정적인 법에는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인증기관은 어떻게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증기관은 어떠한 유형의 책임을 부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둘째, 위조된 디지털 서명으로부터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의 문제, 셋째 사기를 당한 당사자는 문제가 있는 서명을 보증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기술 중립적인 법도 실행의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는 다소 일반화되고 막연한 규정을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인증기관의 적격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전자상거래의 시장이 좁은 경우 인증기관의 난립은 비경제, 정보관리 체계의 부실, 암호화기법의 도입에 따른 외화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될 수가 있다. 국내의 경우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이 없어 Veri-Sign사[154] 등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상 상점에 대한 인증서가 서버당 349달러임을 볼 때 외화유출이라는 부작용 방지차원에서도 국내의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대응 방안

보다 안전한 전자무역거래를 가능케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인증(authentication),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부인방지

당 복호키(Private Key)를 가진 자만이 그 암호화된 내용을 풀 수 있다.

154) Veri-Sign사는 1995년에 RSA Data Security 사로부터 분사되었으며,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을 가능케 하기 위한 디지털 인증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nonrepudiation)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및 인증이란 의사표시를 행한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합법적인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신자 및 시스템의 신원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더욱 강력한 암호 및 디지털 서명과 같은 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고 그 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기밀성이란 거래내용이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적 기록 내용의 노출방지 및 그 제어에 관한 문제이다.

셋째, 무결성이란 송수신 메시지가 전송도중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으로 거래내용의 변조나 승인되지 않은 거래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무결성은 한 블록의 메시지나 자료에 대하여 암호적으로 생성되는 점검수치 즉 메시지 인증코드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메시지가 전송도중 고의 또는 우연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메시지의 내용의 완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조가 확보 되어야 한다.

부인방지 기능은 논리적으로 인증과 무결성이 확보되는 결과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거래에 있어서 표의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일단 행했으면 그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효과를 견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결국 표의자는 그가 의사표시를 발하였다는 점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상대방에 도달한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사후에 임의로 부정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자료가 송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것을 부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암호화(encryption) 기술 및 프로토콜이 요구된다. 특히 갈수록 암호화 해독기능이 발전되고 해커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40bit의 암호화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56bit 암호화 장비는 여전히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네트워크상에서는 서버와 웹브라우저 사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SSL(secure socket layer)[155]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SL에 사용되고 있는

155) SSL은 네트워크상의 메시지 전송상의 보안을 기하기 위해 Netscape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SET의 초창기 버전으로 볼 수 있다.

DES(data encryption standard)[156]의 Key 길이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많이 미달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물론 SSL이 기밀데이터의 전송중에 기밀성을 보장하는데는 우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메시지의 진정한 송신자 또는 진정한 수신자임을 인증해 주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 종전에는 미국이 암호기술 자체를 무기로 간주하여 수출을 규제했었으나,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그 규제를 해제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더욱 강력한 암호화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SSL보다 좀 더 우수한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157]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디지털 인증서에 이중 서명(dual signatures)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SET는 상품거래를 추적하는 수단을 제공하며 SSL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외국암호화기술을 도입하되,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특정적인 법과 기술중립적인 법간의 일관성 및 조화를 유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본다. 즉 특정 기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그 특정기술을 보유한 산업이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외화절약 측면에서 국내에도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정보유출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신설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무역정보 보안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적 · 법적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156) 대칭형 암호화(Symmetric Crypto Systems) 방식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인데, 정보교환 당사자간에 같은 키를 공유해야 하므로 다수인과의 정보교환시 한 사용자는 다수의 키를 유지 · 관리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57) SET 프로토콜은 신용카드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안전한 지불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Mastercard사와 Visa사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되었다.

2. 무역사기 가능성의 문제

1) 문제점

인터넷이 그 특성상 국가와 국가간의 연결이라는 점에 주목한 무역업체들은 인터넷이 무역에는 더할 나위 없는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저없이 바이어 개척이나 공급자를 검색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의 편리함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거래알선 사이트에 등록된 오퍼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 확인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알선거래알선사이트, 검색엔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하여 발굴한 예상 거래처가 과연 거래상대방으로서 적합한지, 즉 대금지급능력이 있는 업자인지, 그리고 상도덕을 지킬 수 있는 업자인지 등을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무역에서는 거래알선 사이트 등에 신용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여과장치가 거의 없이 누구나 오퍼를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으므로, 국내 무역업자들이 거래알선 사이트에 등록된 오퍼의 신뢰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급증하는 거래알선 사이트들은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오퍼에 대한 검증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거래알선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제일 사이트는 UN 무역개발기구의 UNTPDC(UN trade point development center)가 운영하고 있는 ETO(electronic trade opportunity)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세계 각국의 Trade Point와 UN이라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등록 오퍼에 대해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데, 이곳에 등록된 오퍼 역시 별다른 검증없이 단순히 무역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당사자들간의 거래알선 중개를 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처 선정 이후의 신용조회는 국내무역업자가 스스로 행하거나 관

련기고나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행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결국 전자무역은 종전의 무역방식을 획기적으로 효율화시킨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수출업자가 무턱대고 거래상대방을 신뢰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계약을 이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해외의 바이어가 고의적으로 국제사기(fraud)를 행할 목적으로 거래알선 사이트에 구매오퍼를 등록하는 경우도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158]

전자무역은 거래당사자간의 비대면 접촉의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사기의 유형을 보면, 제품을 수출한다는 판매오퍼를 사이트에 게시해 놓고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에게 샘플비의 송금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샘플비를 받고는 추후에 실제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종적을 감추는 경우, 선적된 후에도 매수인이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으로 접촉이 된 해외업체들 중 상담이나 공장방문 등의 목적을 세워 입국한 뒤 사라지는 경우, 한 업체가 매수인을 빙자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경쟁업체의 거래 정보를 알아내는 등 여러 유형의 사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업체들은 거래처 발굴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무역 활용시 애로가 큰 수출단계 중 신용조회가 대기업은 20.0%, 중소기업은 20.3%로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제적 인증제도의 미비, 신용조사에 대한 공신력 부족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대응방안

신용조회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무역유관기관이나 정부 등 무역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의 기관을 선정하여 오퍼인증기관을 두고 이들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오퍼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필

158) 이기희, 전자상거래 시대의 거래처 발굴과 신용문제, 전자상거래 창간호, 2000. 4, p.138.

요가 있다. 또한 국제오퍼 인증시스템을 구축한 후 거래알선 사이트에 등록되는 오퍼를 현재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문제가 없어 해당지역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친 업체가 등록한 오퍼와, 구체적 인증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각 인증기관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전송된 오퍼로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줄 수 있으나 추가적인 신용조회가 요구되는 오퍼, 그리고 여타 소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거래알선 사이트에 직접 등록된 오퍼로서 해당 오퍼의 신뢰도에 대한 어떤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함으로써 거래알선 사이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거래알선 및 거래처 신용조회업무를 한 사이트에서 행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거래알선 사이트에서 신용조화 사이트를 Link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제5장 결 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무역거래의 핵심역할을 하게 되고 국제무역 촉진·발전이 우리 기업과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터넷 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반 여건들이 아직 구비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본 고에서는 인터넷 무역환경 하에서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계약과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유효한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유효성과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전자적 의사표시는 자연인인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전자의사표시 과정 중 클릭의 잘못, 사기·강박 및 컴퓨터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행 법대로 무효나 취소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가격이나 단위표시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기상의 착오로 간주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수출상이 홈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대방과 협상을 할 여지가 없이 확정적인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상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소개와 가격 및 거래단위 등 거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인을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편, 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인터넷 무역계약은 격지자간의 거래이지만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실무적으로는 인터넷 무역계약은 격지자간의 계약이지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전달되는 시간이 매우 짧고, 가상시장에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역거래보다는 승낙의 기간을 짧게 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무역계약상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서는 준거법과 관할재판권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준거법과 관할재판권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합의가 없을 시에는 준거법은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법'에 따라 정하고, 관할재판권에 대해서는 보편주의에 따라 결정하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이 있는 법원에 관할재판권을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무역업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제품매매에 따른 약관 또는 구매신청서나 EDI 약정서 상에 우리나라로 준거법과 관할재판권을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터넷 무역업자들은 우리나라 현행 규정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할재판권에 대한 경우에는 채권자국의 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상대방의 국내 영업소가 있는지 여부와 주된 영업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무역거래에서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거래를 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행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이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고 법률적 요소이외에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한 해결보다는 거래 실정이 맞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하에서는 상거래 분쟁의 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강원진, 무역계약론, 전영사, 2000.

김선광,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학술발표대회, 1998.

김은기, 전자서명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통권 제272호, 1999.

김재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전자상거래의 보안측면에서의 접근,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9.

김종칠,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에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4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1999.

나도성, 한국무역업체의 사이버무역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지 제26권 2호, 2001.

박광근, 전자무역거래의 제문제점에 관한 고찰, 대덕대 논문집 제17호, 1999. 12.

박용성, 인터넷 무역계약 성립에 따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박희주, 인터넷 이용상의 사법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산업자원부 · 한국전자거래(CALS/EC)협회, 전자상거래 백서, 2000..

산업정책연구원, 인터넷 무역진흥을 위한 장기비전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00.

손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저스티스, 제33권 제2호, 2000.6.

-----, 전자상거래의 법적과제, 과학기술과 법, 1997.

송익진 · 박상봉, 전자상거래 보안기술, 정보통신연구, 제12권 제1호, 1998.

양영환 · 오원석 · 서정두, 신용장론, 삼영사, 1993.

오병철,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12.

오세창, 국제물품매매에 필요한 일반거래협정서와 계약서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1.

오원석 외, 인터넷 무역론, 법문사, 2000.

윤준형, 전자무역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기회, 전자상거래 시대의 거래처 발굴과 신용문제, 전자상거래 창간호, 2000. 4.

이대복,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현황과 당면과제, 관세와 무역, 2001. 7.

이호용, 일본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의 소개, 인터넷법률, 2000.

장병주, 국가간 전자상거래 법적 쟁점 현황 및 과제, 관세와 무역, 2001. 7.

전영하, 전자무역계약의 성립과 체결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2.2.

정종휴, 시스템계약론, 정보산업 77호, 1988.9.

정한용, 인터넷을 통한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6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정현우, 전자상거래 활용상의 법적 문제점,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2.

주재훈, 인터넷 비즈니스, 비봉출판사, 1998.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 미래, 1994.

최준선,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비교, 비교사법 제5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이버무역, 200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연감, 2000..

--------,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업계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무역조사부, 2000. 6.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제5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8.

황희철, 전자서명과 법률문제, 정보법학, 1998.

Afuash A. and Christopher L. Tucci, Internet Business Model and Strategies: Text and Cases, McGraw-Hill/Irwin, 2001.

Atiyah P. S.,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4th ed., Oxford : Clarendon Press, 1989.

Basedow Jurgen and Toshiyuki Kono(ed.), Legal Aspects of Globalization; Conflict of Laws, Internet, Capital Markets and Insolvency in a Global

Economy,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Baum Michael S.,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Federal Certification Authority Liability and Policy: Law and Polity of Certificate-Based Public Key and Digital Signatures, 1994.

Baum Micheal S., and Henry H Permitt, Electronic contract, Publishing and EDI Law, willy publishing 1991.

Benjamin Wright and Jane K. Winn, Law of Electronic Commerce, 3th ed., Aspen Law & Business, 2000, § 3.06[3].

Camp Jean L., Trust and Risk in Internet Commerce, MIT Press, 2000.

Cavazos Edward A., and Gavino Morin, Cyberspace and the Law: Your Right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The MIT Press, 1996.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Stenvens and Sons Limited, Pub., 1990.

Commerce: A Policy Prim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Field Richard L., The electronic future of cash: survey of year's developments in electronic cash law and laws affecting electronic banking in the United States, 46 Am.U.LRev. 1997.

Ford Warick, computer Communication Security: Principle, Standard Protocols and Techniques, 1994.

http://allim.go.kr/download1/bodo/moc20001017-2.hwp.

http://www.bolero.net.

http://www.hdmfb2b.co.kr/part/b2b/member/m_pro/fwew202_06.jsp.

Ian Lloyd, Legal aspec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Butterworths, 2000.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B. General Conditions.

INCOTERMS 2000.

Jonathan S. Schwartz,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and Electronic Commerce,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ol 53 Issue 7, 1999.

Mann Catherine L., Sue E. Eckert and Sarah Cleeland Knight, Global Electronic

Michael A. Froomkin, "The Essential Role Trusted Third Parties in Electronic

Commerce", Oregon Law Rev. 1996.

Nimmer, Raymond T., Selling Product Online; Issues in Electronic Contracting, Practising Law Institute, 1997.

Oberson Xavier and Lorenzo Piaget, Electronic Commerce and Tax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ol 52 Issue 12, 1998.

Perdue Elizabeth S., Creating Contracting Online: Online Law, Addison-Wesley Developers Press, 199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Article 2(a).

Warwick Ford, Advances in Public-Key Certificate Standards, SIG Security, Audit & Control Rev., 1995.

A Study on the Electronic Trade Contract and concerned Problems

- subject to the legal issues -

Park, Jong-Yam

Department of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 Business Administration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 Sung-Won)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 traditional international trade could overcome the regional and spatial limits over computer network. By this electronic tools, international trade firms can reduce much time and cost arising from their international operations. However electronic trades are currently doing as complementary means of off-line trade, and focuses mainly on the procedure of international trade. And electronic trade over internet is spreading out international marketing, oversea credit inquiry,

international trade contract, authentication of contract concluded. But electronic trade contract over internet still raises many legal issues concern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for the electronic international trade and legal issues such as the offer and acceptance of electronic trade contract, the time and place of formation of electronic trade contract, formal requirement of writing and signature in formation of electronic trade contract, and to study fo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ternet trade and the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roblems concerned. So,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examine problems derived from electronic trade as follows.

First, it is easy for an exporter to find an importer in oversea to do business over the internet. But business partners concerned of electronic trade doesn't transact with each other directly in face to face. So, an exporter may always doubt about the importer's financial standing, unexpected payment etc.

Second, electronic trade will rais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ntellectual properties right including the internet domain names, the patent rights, copyrights and the trade marks, because the intangible goods can be duplicated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a right reserver's permission. Therefore solutions to this problems are not found in the near future, the benefit of the electronic trade over internet will be disappear.

Third, electronic contract is formed through the exchange of offer and acceptance over internet between parties concerned. And electronic contract by this computer-generated offer and acceptance could form a valid contract,

However electronic trade transaction arise an important issues

whether electronic trade contract can form a valid legal contract or not.

Forth, the methods of communication about the acceptance of an offer affect both the time and place that the contract is concluded.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contract is no complete until the acceptance has been received by the offerer. But exceptional rule of this basic principle is mailbox rule, in which acceptance has been held to be complete upon posting a documents or dispatching a telegram, even if the documents or telegram is delayed or lost.

However the court of most nations, today, have held that with modern electronic means or instantaneous communications the rational behind the mailbox rule does not apply. Therefore, acceptance by electronic message as telex, fax is effective only when it is received.

Fifth, we should establish the security network of the data and consider the safer encryption technology, because electronic trade contract is exposed to many risks like hacking any time by computer networks as internet are open networks. And there will have qualified professionals in electronic trade practices. Also, the electronic logistics systems such as cargo tracking systems and bar codes need to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which are very critical to the physical transport of good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electronic trade over internet and alternatives solution to this problems shall be solve in the future. And We are sure that electronic trade will be eventually improve the balance of payment of korea provi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and encourage actives concerned of the korean firms.